

ESG 경영 실무를 위한

ESG INFORMATION DISCLOSURE HANDBOOK

E
Environmental

S
Social

G
Governance

ESG 정보공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www.cses.re.kr

사회적가치연구원 지음



ESG핸드북 시리즈는 기업 경영 현장에서 지속가능경영의 실행을 돕는 시리즈입니다. ESG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개념적인 내용부터 해당 이슈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실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까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SG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꺼내어 볼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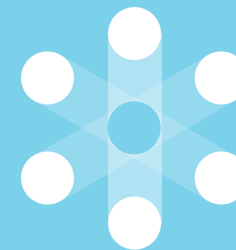
SV Hu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svhub.co.kr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은 SK에서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연구, 사회문제와 사회적 가치 학술 연구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는 교육, 연구,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과 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ESG INFORMATION DISCLOSURE HANDBOOK]



ESG Handbook _4 정보공개를 펴내며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사회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측정’, ‘인센티브’, ‘협력’ 세 가지를 핵심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재단, 민간기업 등 기존 기업의 비재무 정보인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로 측정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최근 들어 이슈로 떠오른 Net Zero, 탄소중립 실현,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ESG 경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이노소셜랩과 함께 단순 발간물이 아닌 유익하고 다양한 활용이 될 수 있는 ‘ESG 정보공개 핸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핸드북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대표 발간물인 ESG핸드북 시리즈의 초석이 된 <ESG Handbook: Basic>을 바탕으로 <S in ESG>, <G in ESG>에 이은 네 번째 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 및 ESG 경영의 성과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유럽의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S1(일반요구사항) 및 S2(기후관련공시), 미국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관련 공시법 초안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ESG 공시 의무화로 인하여 혼란인 상황 속에서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을 요약 및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유형별 ESG 가이드라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다른 관련 안내자료와 차별점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ESG 정보공개 및 공시가 될 수 있도록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3대 ESG 공시(ESRS, ISSB, SEC)에 국한하지 않고 Net Zero, 생물다양성 등과 관련된 보고 요구도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ESG 정보공개로 그 범위를 넓혀 해당 내용을 담았습니다. ESG 정보공개 연대기 및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으며, 실무적 적용에 도움이 되고자 글로벌 기업의 ESG 정보공개 우수 사례를 제시하였고 전반적으로 가독성 높은 핸드북이 되도록 집중했습니다.

매일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 ESG 정보는 점점 구체적으로 기업, 공공기관, 소비자 등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노소셜랩과 함께 발간한 우리의 핸드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ESG 실천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의미있는 나침반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겨울에
사회적가치연구원장 나석권

CONTENTS

머리말

ESG 정보공개 핸드북을 펴내며

INTRODUCTION

1. ESG 정보공개에 위한 친절한 Tip 6	08
2. ESG 정보공개 연대기	12
3. ESG 정보공개 역사와 주요 사건	14
4.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선택과 세 가지 유형	20
5. 글로벌 ESG 정보공개 동향	24
6. ESG 정보공개 실행 프로세스	26

PART 1

ESG 정보공개 주요 가이드라인

1. GRI	30
2. ISSB	36
3. ESRS	42
4. TCFD	46
5. TNFD	51
6. SASB	59
7. CDP	64
8. UNGPs	68
9. SEC	72

PART 2

E 환경 영역 정보공개

1. 기후위기/온실가스	76
2. 순환경제/자원순환	86
3. 수자원/천연자원 사용	90
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92
5. 환경오염 방지/유독물질 관리	94
6. 폐기물	96
7. 공급망 환경영향 관리	98

PART 3

S 사회 영역 정보공개

1. 인권	102
2. 노동권	106
3. 안전과 보건	108
4. 채용/교육훈련/복지	112
5. 공정운영 및 거래	116
6.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확산	118
7. 고객, 소비자	119
8. 지역사회	122

PART 4

G 거버넌스 영역 정보공개

1. 소유구조	128
2. 이사회	129
3. 비전/전략/목표	133
4. 중대성 주제	135
5. 정책 및 내재화	137
6. 준법 및 윤리경영	139
7.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 관리	140
8. 이해관계자 참여	142

PART 5

글로벌 기업의 ESG 정보공개 사례





1. 유니레버(Unilever)	146
2. 코카콜라(Coca-cola)	148
3. 힐튼(Hilton)	150
4. 애플(Apple)	152

APPENDIX

1.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 인덱스 비교표	156
2. GRI 2021 인덱스	164
3. ESRS 인덱스	171
4. TNFD 인덱스	174
5. 참고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181

사용자 가이드

ESG Handbook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Interactive PDF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책자의 표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현재 페이지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본 책자의 목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현재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SG INFORMATION DISCLOSURE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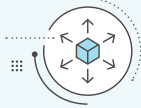


1. ESG 정보공개를 위한 친절한 Tip 6
2. ESG 정보공개 연대기
3. ESG 정보공개 역사와 주요 사건
4.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선택과 세 가지 유형
5. 글로벌 ESG 정보공개 동향
6. ESG 정보공개 실행 프로세스

1. ESG 정보공개를 위한 친절한 TIP 6

▼ TIP.1

ESG 정보공개는 왜 하는 건가요?



- **투명경영 차원:**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대의적 기업경영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공개할 수 있음
- **법, 제도적 차원:**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는 등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임
- **투자자 요구:** 주식 투자, 은행 대출, 채권 발행 등의 과정에서 투자자가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
- **고객, 거래처 요구:**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과의 거래 및 계약에서 ESG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평가기관 요구:** 기업신용평가, ESG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기관 또는 평가사에서 ESG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

▼ TIP.2

ESG 정보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 **사업보고서 포함:** 기업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에 ESG 경영성과를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ESG 보고서 등을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발간할 수 있음
- **ESG 이슈별 보고서:** 기후위기 대응 보고서, 인권경영보고서, 생물 다양성 보호 보고서, 공급망 관리 보고서, 순환경제보고서 등 ESG 이슈 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음
- **홈페이지 또는 SNS:** 보고서 형태가 아닌 홈페이지나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ESG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질의서 응답:** 정부기관, 투자자, 은행, 거래처, 평가사 등에서 요구하는 질의서나 지정된 양식에 따라 ESG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TIP.3

ESG 정보공개하는 법, 규정 등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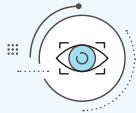


- **법, 제도:** 기업이 위치한 국가, 거래하는 국가, 주식을 상장한 국가 등의 법과 제도에 따라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예: EU ESRS, 미국 SEC 등)
-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UN, OECD, ILO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예: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
- **민간기구 가이드라인:**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ESG 정보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예: GRI Standards, ISSB, TCFD, TNFD, CDP 등)
- **평가기관 가이드라인:** ESG 평가를 하는 기관이나 평가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예: 한국ESG기준원, S&P, 에코바디스 등)
- **가이드라인 혼합 사용 가능:** ESG 정보공개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이드라인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ESG 정보공개를 위한 친절한 TIP 6

▼ TIP.4

ESG 정보공개는 제3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법, 제도의 검증 요구:** ESG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법과 제도에서 제3자 검증을 요구한다고 하면 자격을 갖춘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함 (예: EU ESRS, 미국 SEC의 탄소 배출량 제3자 검증 요구 등)
-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지속가능성 보고서 본문 전체에 대한 제3자 검증은 자율이며, 단, 법과 제도, 투자자, 거래처가 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자원 사용량, 공급망 인권영향 평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제3자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 **제3자 검증의 범위와 책임:** 제3자 검증은 기업이 제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제한적 검증과 기업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부터 검증하는 사실 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신뢰성 확보:**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제3자 검증을 받는 것을 권장함

▼ TIP.5

이 핸드북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ESG 정보공개 전반적인 이해 도움:** 기업 실무자가 ESG 정보공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핸드북을 제작함
- **글로벌 가이드라인 이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함. 이를 통해 기업의 실무자가 ESG 정보공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ESG 정보공개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 다양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설명하여 기업 실무자들이 ESG 이슈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함

▼ TIP.6

ESG 정보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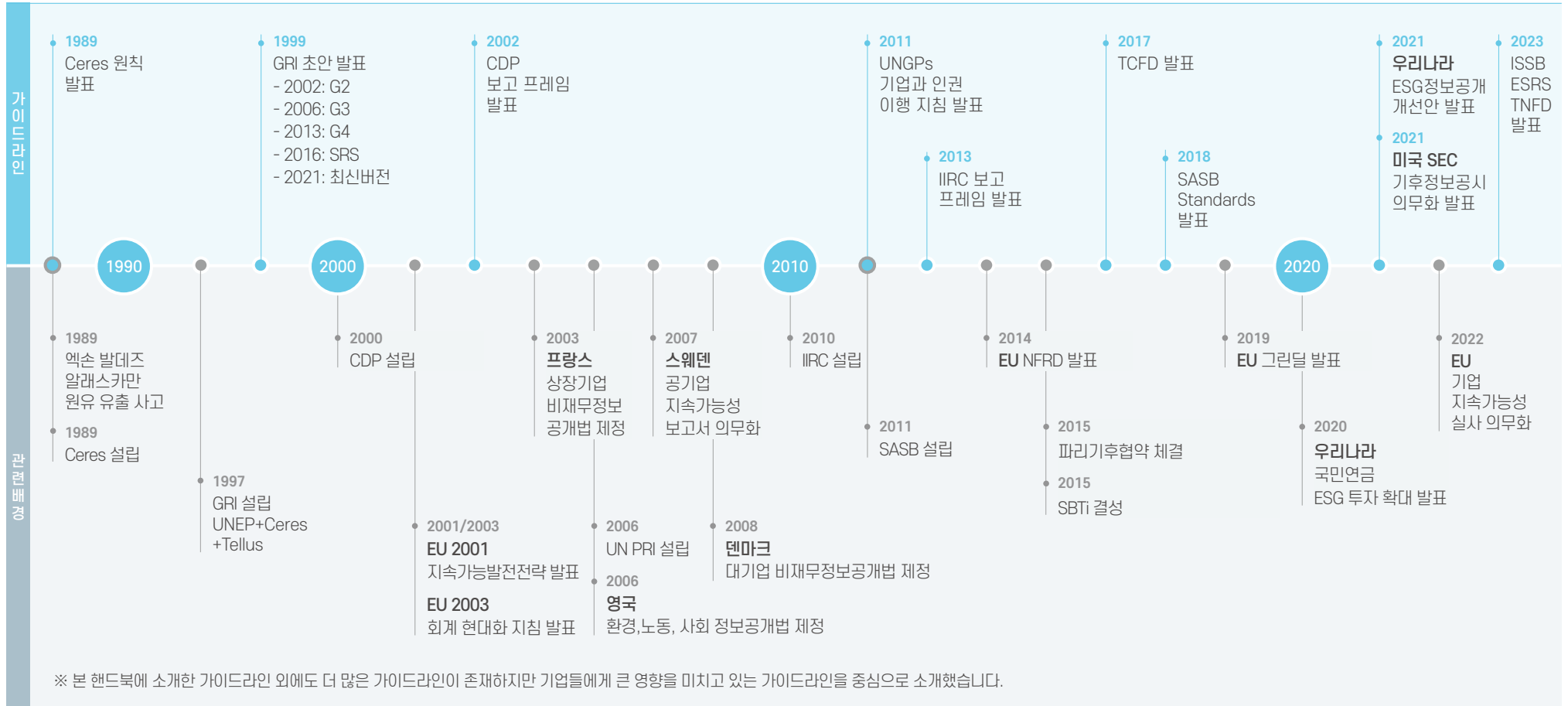


- **지속가능경영 성과 창출과 데이터 관리:**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무리 보고 형식을 잘 갖춘다고 해도 온실가스 감축, 자원 재활용 확대,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의 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지속가능경영의 성과가 없으면, 투자자, 거래처, 규제 기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정량적 데이터 관리가 매우 중요함
- **글로벌 가이드라인 이해와 활용:**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성실하게 잘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ESG 정보공개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정보의 신뢰성 확보:** ESG 정보공개를 비롯해 기업의 모든 정보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성 확보이기 때문에 외부의 ESG 평가나 홍보, 마케팅을 위해 정보를 과장하거나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워싱(washing)”의 비판을 받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2. ESG 정보공개 연대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 사회(S)적 책임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1989년 <엑손 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CERES (1989), GRI (1997), CDP (2000) 등 비재무 정보공개를 위한 글로벌 단체와 이니셔티브들이 결성되었다. 연이어 프랑스(2003), 영국(2006), 스웨덴(2007), 덴마크(2008)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상장기업, 대기업, 공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 이행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었고 2014년에 EU가 비재무 정보공개 의무화 규정(NFRD)을

발표하면서 EU 전체에 확대되었다. 한편, 2010년에 IIRC가 설립되면서 기업가치평가에 비재무가치도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런 가치평가관점의 비재무정보공개 요구는 SASB (2011), ISSB (2021) 설립 등으로 이어졌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이후 기후위기관련 정보공개 프레임 TCFD (2017)이 발표되었고, TCFD 프레임은 GRI, ISSB, ESRS 등에 반영되었다. 2023년에 이르러 ISSB, ESRS, TNFD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ESG 정보공개가 점차 의무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



3. ESG 정보공개 역사와 주요 사건

1980년대 이전

미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과 유럽에서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의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CSR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것이 법, 규제 또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1989

엑손 발데즈호 원유 유출 → Ceres 결성, 원칙 발표

1989년 3월 미국 정유기업 엑손의 원유 운반선 엑손 발데즈(Exxon Valdez)가 알래스카만에서 좌초되어 원유 41만 톤 이상을 유출했다. 이 사건으로 환경단체들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선구자였던 조엔 바바리아(Joan Bavaria)와 환경운동가 그룹이 협력하여 기업의 환경적 책임 이행과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단체 세레즈(Ceres)를 결성하고 『세레즈 원칙 및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997 - 2000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설립 → GRI G1 발표

Ceres는 설립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자발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부응한 UNEP(유엔환경계획)가 Ceres와 Tellus Institute(가이드라인 연구기관)와 협업하여 1997년 GRI를 설립했다. GRI는 1999년 공개 초안을 발표했고, 2000년 6월에 첫 번째 정식 버전 『GRI G1』을 발표했다. UNEP는 2002년 8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정상 회의>에서 GRI G1의 글로벌 확산 버전인 G2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GRI는 CSR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G3(2006년), G4(2013),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2016), (2021) 등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00 - 2002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설립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가 체결된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측정과 보고에 관한 방법과 검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영국의 사업가이자 환경단체 대표였던 폴 디킨슨(Paul Dickinson)은 동료들과 함께 기업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DP를 설립하고, 2002년 『CDP 보고 및 검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01 - 2003

EU: 지속가능발전전략 채택 → 회계 현대화 지침 발표

EU는 1993년 설립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한 EU 회원국의 균형 성장’을 매우 중요한 정책 지향점과 전략으로 삼았다. 2001년 EU 정상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전략: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2003년 『EU 기업 회계 현대화 지침』을 발표하여 EU 회원국의 기업들이 기업의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환경, 노동,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 보고 또는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프랑스(2003), 영국(2006), 스웨덴(2007), 덴마크(2008) 등이 국내법에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

2006

UN 책임투자원칙 결성

1997년 제9대 UN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코피 아난(Kofi Atta Annan)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UN의 최우선 과제로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고 이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고자 같은 해 UN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를 조직했다. 이어서 2003년부터 TFT를 구성하여 금융당국과 은행, 투자 기관들이 책임 있는 투자를 하도록 원칙 제정을 준비했고, 2006년 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를 결성하였다. UN PRI에는 주로 글로벌 공적 펀드, UN 회원국의 연기금 및 국부펀드가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2009년 회원기관이 되었다. UN PRI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미국과 유럽 민간 투자 기관의 사회책임투자를 글로벌 원칙화 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확대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때부터 ESG란 용어가 글로벌 공식석상에 등장했다. UN PRI의 6대 원칙 중 투자 기관이 투자대상 기업에게 ESG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ESG 정보공개 역사와 주요 사건

2010 ~ 2011

IIIRC 설립 → IIIRC 가이드라인 발표

2006년 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가 제정되자 금융기관, 투자 기관 입장에서 책임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ESG 정보공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및 감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이 미국과 유럽의 금융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2010년 국제회계사 연맹(IFAC), GRI, UN PRI, 영국찰스왕태자위원회 등이 함께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IIRC (The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를 설립하고,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GRI 보고를 하나의 보고서로 통합하는 방식의 IIIRC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IIRC는 2021년 SASB와 통합하여 가치보고재단 VRF (Value Reporting Foundation)를 설립하였고, VRF는 2022년 국제회계기준재단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과 다시 통합했다.

2011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발표

UN은 2011년 제17차 정기총회에서 UN 인권이사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가 발의한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인권 관련 이행사항과 보고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2011 ~ 2018

SASB 결성 및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08년 미국으로부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기업의 재무지표에만 의존한 기업평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나 투자에 재무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 가능 투자 전문가인 진 로저스(Jean Rogers)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 지속가능성회계표준 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결성되었고 7년간의 작업 끝에 2018년 SASB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SASB는 2021년 IIIRC와 통합하여 <가치보고재단 VRF (Value Reporting Foundation)>을 설립하였고, VRF는 2022년 6월 <국제회계기준재단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과 통합했다.

2014 ~ 2023

EU NFRD → CSRD → ESRS 발표

EU는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2001)』 및 『기업회계 현대화 지침(2003)』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발표했다. NFRD는 근로자 500인 이상, 자산 2천만 유로, 연수익 4천만 유로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2018년부터 EU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재무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2021년 NFRD를 구체화하는 세부지침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발표하였고 **2023년에는 CSRD의 실행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발표했다.

2015

UN 파리기후협정 체결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회의에서 195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한 온도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이후 발표되거나 개정된 ESG와 관련된 모든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필수적인 요구사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SBTi 결성

2015년 UN 글로벌 콤팩트(UNGC), CDP, 세계자연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은 파리기후협정에 발맞추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의 성과를 공개하는 민간 협력단체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를 공동 설립했다. SBTi는 과학적인 측정 및 검증 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활동을 검증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회원사는 SBTi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활동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ESG 정보공개 역사와 주요 사건

2015 - 2017

TCFD 설립과 발표

2015년 4월에 열린 G20 재무 장관회의에서 세계 중앙은행(Central Bank) 협회는 금융 부문이 기후 관련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금융안전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주축으로 기후 관련 기회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이를 G20 각국의 재무정책 및 중앙은행의 금융 시장 관리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분석과 보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하고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2015년 12월에 결성한다. TCFD는 2017년 6월에 첫 번째 기후 관련 재무 공개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

2019 ~ 2022

EU 그린 딜 → 택소노미 발표

2019년 EU는 파리기후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그린 딜 계획을 발표했다. EU 그린 딜은 탈 탄소(넷 제로)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다. 2020년 EU는 그린 딜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금융투자자의 분류체계인 EU 택소노미(Taxonomy) 기본 원칙을 발표했으며 2022년 실행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EU 그린 딜과 택소노미는 NFRD, CSRD, ESRS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로 작용하고 있다.

2020

우리나라 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 계획 발표

2020년 11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글로벌 투자시장의 ESG 투자 확대 및 UN PRI 회원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2년부터 운용자산의 50%이상을 'ESG를 고려한 투자'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우리나라 ESG 열풍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2020 ~ 2023

TNFD 결성 및 발표

2020년 UN개발계획(UNDP), UN환경계획(UNEP), 세계자연기금(WWF), Global Canopy(영국 환경단체) 등은 자연 생태계의 위기와 변화가 비즈니스에게 미치는 기회와 위기를 기업 스스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자연관련 기회와 위기관리 공개 태스크포스 TNFD (Nature-related Risk and Opportunity Management Disclosure Framework)를 설립했다. 2023년 9월 TNFD 프레임워크가 발표됐다.

2021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발표

국민연금이 ESG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ESG 정보공개를 공식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2021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연이어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기업 ESG 정보공개 제도화의 문을 열게 되었다.

2021 ~ 2023

ISSB 설립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ESG 정보공개 등 기업의 비재무 정보공개 의무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재무성과 중심의 기업 재무정보공개 지침에 결합 가능한 비재무 정보공개 지침을 만들기 위해 2021년 11월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하였다. ISSB 설립 목적은 기업의 연례 사업보고서에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통합하여 공개하고 제 3자 검증 체계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다. 2023년 6월 ISSB는 SASB를 개선한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 + S2(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을 발표했다. ISSB 채택 여부는 각국 정부의 자유 선택사항이다.

2022

미국 증권위원회 기후 관련 공시 규칙 발표

2022년 미국 의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 증권위원회는 증권 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 또는 연례 사업보고서와 같은 기업이 발행하는 정기 보고서에 TCFD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과 Scope 1, 2, 3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 보고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발표

2022년 EU는 EU 지속가능발전전략과 EU 그린 딜의 실행 및 EU 내 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EU 기업 및 EU 기업과 거래하는 공급망의 사회(특히 인권), 환경(특히 온실가스배출) 정보를 기업 스스로 파악하고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의 실사를 시행하며 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선택과 세 가지 유형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선택 포인트

각 기업이 ESG 정보공개에 있어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지는 기업이 속한 국가(정부)나 투자, 거래 등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ESG 정보공개에 관한 법과 규정, 투자자, 거래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취사선택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범용적인 ESG 정보공개가 필요한 기업: GRI, ISSB

정부기관, 투자자, 거래처 등이 ESG 정보공개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기업은 GRI, ISSB 등을 이용하여 ESG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GRI는 가장 범용적인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70% 이상이 GRI를 이용하고 있다. ISSB는 향후 정부 및 ESG 투자 기관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이드라인으로 GRI와 함께 사용하거나 대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EU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거래하는 기업: ESRS

EU 국가 내에서 기업을 운영(또는 상장) 하거나 EU 기업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2023년에 확정된 ESRS를 활용하여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SRS는 다른 가이드라인과 달리 법제화(의무화) 된 것으로 해당되는 기업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 특정 이슈 정보공개에 관한 외부 요구가 있는 기업: CDP, UNGPs, TCFD, TNFD

투자자, 거래처 등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투자회사, 은행, 연기금, 자동차, IT, 화학 기업 등은 CDP에 따라 탄소정보공개를 요구하거나 UNGPs에 기반한 인권경영보고서 발간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TCFD, TNFD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정보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확실히 되고 있다.

• 미국 증권시장 상장기업: SEC, SASB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정보공개를 해야하는 기업은 SEC 가이드라인에 따라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SASB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SG 정보공개 우리 기업은 어떻게?



4.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선택과 세 가지 유형

유형 1 - 지속가능경영/책임 경영 관점

가이드라인	GRI, ESRS
정보공개 목적	비즈니스 가치사슬 상에서 사회·환경과 주고 받는 영향(impact)을 기업 스스로 파악하고, 나아가 부정적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 영향은 높여 나가는 책임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즉,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할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책임 경영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선택할 필요가 있는 기업	· GRI: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는 기업 · ESRS: EU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거래하는 기업
정보공개 주 대상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 (주주, 임직원, 고객, 투자자, 협력사, 정부, 언론, 지역사회 등)
정보공개 초점	·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책임 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 · 중대성 이슈: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업과 사회·환경이 주고 받는 중요한 영향 · 기업이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관련 데이터 및 변화 추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목표, 활동

유형 2 - 특정 이슈 관점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CDP, TCFD, TNFD
정보공개 목적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특정 이슈, 예를 들면 인권(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TCFD), 생태계 파괴에 따른 자연자본 위기(TNFD), 온실가스 배출/물/숲/공급망 관리(CDP) 등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고 받으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함. 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정부/공공기관/기업, 투자자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보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선택할 필요가 있는 기업	투자자/거래처의 요청이 있는 기업, 온실가스/인권/생물다양성 등 관련 특정 이슈를 보다 체계화, 세분화하여 관리하려 하거나, 그럴 의지가 있는 기업
정보공개 주 대상	고객(정부,기업), 투자자, 투자평가사
정보공개 초점	· 관련 이슈의 현황 및 개선 목표와 전략 · 관련 이슈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 · 관련 이슈의 데이터 · 관련 이슈의 개선 목표와 전략을 실행한 노력, 평가, 성과

유형 3 - 가치 평가 및 투자 관점

가이드라인	SASB, ISSB, SEC
정보공개 목적	투자자, 투자평가사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가치 측정과 ESG 등급 (상대)평가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정보공개, 기업 운영과 가치사슬 전반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보 보다는 산업별 특성에 기반한 기업 내·외부의 지속가능성 위험 요인 및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함
선택할 필요가 있는 기업	투자자/거래처의 요청이 있는 기업, 미국 상장기업, ESG 투자 이슈 (미국, 유럽 주식 상장 예정, ESG 채권 발행 등)가 있는 기업
정보공개 주 대상	증권시장, 투자자, 투자평가사
정보공개 초점	· 기업이 속한 산업별 지속가능성 위험 요인 및 위기 지표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 개선 목표, 전략, 실행 활동과 성과, 데이터

5. 글로벌 ESG 정보공개 동향

EU: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정착 단계

- 2014년 NFRD: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 발표
- 2021년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발표
- 2023년 ESRS: 지속가능성 보고서 표준 발표
일정 규모(500명 이상, 연매출 5천만 유로, 자산총액 2천5백만 유로 등) 이상의 기업은 ESRS에 따라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 중소기업 가이드라인은 추후 공개 예정

영국: 회사법 ESG 정보공개 의무화

- ESG 정보공개를 위한 단일 법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 회사법에 따라 상장회사 규칙, 공개 지침 및 투명성 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기업은 이사회 구성과 기업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 에너지 및 탄소, 현대판 노예법, 평등법, 뇌물수수법 등의 실행 성과 등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 영국정부의 탄소중립 2050계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TCFD에 따라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영국 무역산업부는 ISSB를 준용하는 차원에서 2024년 UK SD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음

한국: 상장사 ESG 정보공개 의무화

- 2021년: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안 발표,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의무화 예고
- 2024년 상장기업 ESG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싱가폴: 금융산업 중심 ESG 공개

- 싱가포르거래소(SGX), 통화청(MAS 중앙은행) ESG 정보공개 주도
- 2016년: SGX 상장사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개 지침 발표
- 2018년: 금융기관 투자 시 ESG 요소 통합 지침 발표
- 2023년: ESG 펀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지침 발표
- 2025년: TCFD 기후공시 의무화 예정

일본: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제시

-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이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제시, ESG 정보공개 의무화 검토 중
- 금융청: 일본 스튜어디십 코드(2014)
- 경제산업성: TCFD 가이드런스(2018), 거버넌스 가이드라인(2018), 다양성 가이드라인(2020)
- 도쿄 증권거래소: ESG 공시를 위한 핸드북(2020년)

뉴질랜드: 금융기관 TCFD 의무화

- 뉴질랜드: 2023년부터 은행, 보험사 등 대형금융기업은 TCFD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개해야 함

미국: 상장사 기후위기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 2022년: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관련 공시 법안 제안에 의하면 상장기업은 정해진 일정(대기업: 2024년, 중견/중소기업: 2025년)에 따라 탄소배출 데이터와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사업보고서 등에 공개해야 함(※2023년 12월 현재 Scope 3 공개 방안 논의 중임)
- SEC는 그동안 SASB 가이드라인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SASB가 포함된 ISSB 가이드라인 또한 기업이 자발적인 보고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음

6. ESG 정보공개 실행 프로세스



ESG INFORMATION DISCLOSURE

PART 1

ESG 정보공개 주요 가이드라인



- 1. GRI
- 2. ISSB
- 3. ESRS
- 4. TCFD
- 5. TNFD
- 6. SASB
- 7. CDP
- 8. UNGPs
- 9. SEC

1.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개요

- **공식명칭:**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GRI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 **주관단체/위치/설립연도:**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1997년
- **최초 가이드라인 발표/현재 버전 발표:** 2000년 6월 / 2021년 11월
- **목적**
 -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
 - 조직이 경제, 환경, 사람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
 - 조직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책임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
 - 조직의 정보공개가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
 - 보고서의 사용자가 조직의 영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등 국제 기구의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 실천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GRI 사용자:** 모든 조직(*영리기업만이 GRI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기본 구조

* 세부 보고지표(INDEX)는 Appendix 참조

GRI Standards		
Universal Standards (공통 표준)	Sector Standards (산업영역 표준)	Topic Standards (주제 표준)
GRI 1, 2, 3	GRI 11, 12, 13	GRI 201 ~ 418
GRI 1: 작성 원칙 GRI 2: 조직 정보 GRI 3: 중요 이슈	GRI 11: 오일, 가스 GRI 12: 석탄 GRI 13: 농업, 양식, 어업	GRI 201~207 경제 관련 GRI 301~308 환경 관련 GRI 401~418 사회 관련

※ 2023년 12월 현재 GRI 2021 공식 한국어판이 발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핸드북의 GRI 문구 및 내용은 연구진이 임의 번역한 내용임

핵심 컨셉

- GRI는 아래의 4개 핵심 컨셉을 다루는 것이 필수 사항임

1 영향(Impact)

- 조직의 활동 또는 비즈니스 관계의 결과로 경제, 환경,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실제적/잠재적, 부정적/긍정적, 단기적/장기적, 의도된/의도되지, 가역적/비가역적)

2 중요 주제(Material topic)

- 조직의 영향 중에 경제, 환경,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여에 대한 목표/전략/정보공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
- 중요 주제 선정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함

3 실사(Due diligence)

- 조직이 경제, 환경, 사람에게 미치는 실제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방법

4 이해관계자(Stakeholder)

- 조직이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또는 그룹

1. GRI

요구사항

• GRI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선 다음의 9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GRI가 제시하는 보고 원칙을 따라야 함
- ② GRI 2가 제시하는 일반공시 사항을 보고해야 함
- ③ 중요 주제를 설정해야 함
- ④ GRI 3가 제시하는 중요 주제 개념 및 설정 방식을 따라야 함
- ⑤ GRI 주제 표준이 제시하는 각각의 주제를 보고해야 함
- ⑥ GRI 원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주제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함
- ⑦ GRI 인덱스를 제시해야 함
- ⑧ GRI 기준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 ⑨ GRI에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보고 원칙

• GRI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조직은 8가지 보고원칙을 준수해야 함

- ① 정확성(Accuracy)
 - 보고를 뒷받침하는 정보/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증명할 수 있어야 함
- ② 균형성(Balance)
 -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도/편견 없는 균형성을 갖추어야 함
- ③ 명료성(Clarity)
 - 접근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④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시간에 따른 변화사항을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보고해야 함

⑤ 완성도(Completeness)

- 조직의 영향을 충분히 파악/분석/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⑥ 지속가능성 맥락(Sustainability Context)

- 지속가능한 발전의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함

⑦ 적시성(Timeliness)

- 일관성 있는 일정과 기간에 따라 보고해야 함

⑧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

- 정보의 정확성 등 품질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른 보고와 일치

- GRI 보고서는 조직의 다른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특히 연례 사업보고서 및 재무보고서의 보고 기간, 범위, 조직과 일치시켜야 함. 가능한 재무 보고와 동시에 보고할 것을 권장 함

신뢰성 확보

-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거나 확보하기 위해 1)내부 검토/통제, 2)외부 검증/보증, 3)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패널 검토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은 필수 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임

1. GRI

중요 주제 선정

- GRI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2가지 조건을 따라야 함

1) 중요 주제 결정 지침

STEP.1

• 조직의 상황 파악

- 조직은 자신의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맥락과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그 개요를 작성해야 함

STEP.2

• 실제 및 잠재적인 영향 파악

- 비즈니스 정보,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법률 검토, 내외부 감사 자료, 국제기구 정보, 글로벌 가이드라인, 뉴스,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분석하여 경제, 환경, 사람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해야 함
- GRI 산업 영역(Sector)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영역이 제시하고 있는 주제의 영향을 파악해야 함

STEP.3

• 영향의 중요성 평가

- Step 2에서 파악된 영향 중 실제적으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함. 비즈니스 관계(가치사슬)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STEP.4

• 보고 시 가장 중요한 영향의 우선순위 지정

- Step 3에서 정해진 중요한 영향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각 영향의 차단 지점 또는 임계값(관리 목표치)을 정의하고 어떤 영향을 보고할지 결정해야 함. 이해관계자의 의견 일부만 확인(서베이 등) 하는 방법만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으며, 비즈니스 가치사슬 관계, 영향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2) 중요 주제 정보 공개

• 중요 주제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 전반에서 경제, 환경 및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한 방법과 사용한 자료의 출처와 자료 제시
- 중요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명시

• 중요 주제 리스트

- 중요 주제 리스트 제시
- 이전 보고 기간과 달라진 주제 리스트 설명

• 중요 주제 관리

- 해당 주제가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경제, 환경, 사람에게 미치는 실질적·잠재적·부정적·긍정적 영향 서술
- 해당 주제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설명 및 이와 관련된 활동 또는 비즈니스 관계 서술
- 중요 주제에 관한 조직의 정책 또는 약속 서술
- 중요 주제에 관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해결하기 위한 조치 및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조치
- 조치의 효과를 추적·평가하는 목표 및 성과지표, 프로세스, 성과 자체 및 이를 조직 운영과 정책에 통합하는 방법
- 중요 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방법,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산업영역 표준 Sector Standards GRI 11, 12, 13

- GRI는 2022년부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부터 우선 순위로 <영역 표준 (Sector Standards)>을 발표하고 있다. 해당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중요 주제를 <영역 표준>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모든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GRI 11: 오일&가스 산업 / GRI 12: 석탄 / GRI 13: 농업, 어업, 양식업

2.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개요

- **공식명칭:**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
- **설립기관/위치/설립연도:** IFRS Foundation / 미국 / 2021년
- **공시 기준 구조**



- **공개 초안 발표:** 2022년 3월 / **현재 버전 발표:** 2023년 6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단, 적용 첫해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일부 정보 미공시 허용)

기준 제정 배경 및 방향성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를 위한 단일의 고품질 국제 기준 필요
- 가능한 IFRS 회계 기준의 관련 개념을 사용, TCFD 권고안 통합,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및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자료 기반으로 제정
- 국가별 공시 요구사항 및 다른 국제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운용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함
- 많은 요구사항을 전 세계 기업의 역량과 준비 수준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설계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고도의 판단이나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정보를 작성할 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일에 기업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개념을 기준서 핵심영역에 포함함

IFRS S1 요약

-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위함
- **적용 범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고 보고할 때 적용. 재무제표가 IFRS 회계기준으로 작성되는지 또는 다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작성되는지와 관계없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

IFRS S1 핵심요소

-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 **전략:**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 **위험 관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또는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포함)

IFRS S1 개념적 기반

- **중요성:**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
- **공정한 표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
- **보고기업:** 관련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
- **연계된 정보**
 - 1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
 - 2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내의 연계
 - 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기업이 발행한 다른 일반목적재무보고서(ex. 기업의 관련 재무제표)간의 연계

2. ISSB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공시 위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서 제공
- **보고시기:**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 **비교정보:** 당기에 공시된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 공시
- **준수 문구:**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작성한 경우, 그런 준수 사실을 기재할 수 있음
- **지침의 원천(source of guidance):**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그 외에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지침의 원천(sources of guidance)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적용 가능한 공시 요구사항 식별
필수적 고려	SASB 기준	●	●
선택적 고려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	●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도록 고안된 요구사항을 가진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	●	●
	동일한 산업(들) 또는 지역(들)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식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	●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

※ 기업은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를 기업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음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린 유의적 판단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함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 해야함
-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에 보고된 오류와 관련된 비교정보를 재작성 해야함

IFRS S2 요약

-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위함
- **적용 범위:**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기회(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적용범위에서 제외)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IFRS S2 핵심요소

- **거버넌스:**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하여 공시
 - 의사결정기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들) 및 개인(들)
- **전략:**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에 대해 공시
 - 위험과 기회: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 사업 모형과 가치사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

2. ISSB

- 전략과 의사결정: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후 관련 전환 계획을 포함해, 전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 기간 및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기후 회복력: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한 기후 관련 변화, 전개 상황,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력(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수행)
- **위험관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프로세스를 공시
- 위험 프로세스·정책: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와 정책
- 기회 프로세스: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 프로세스(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사용 여부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 포함)
- 전체 위험관리에 통합: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가 기업 전체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작용하는 범위와 방식
-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이해하도록 공시
- 산업 전반 지표: 기업이 속한 산업과 무관한 7가지 지표 공시(온실가스,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 배치, 내부 탄소 가격, 보상)
- 산업기반 지표: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표 공시
- 기후 관련 목표: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 또는 적응하거나 기후 관련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 그리고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 공시

IFRS S1 S2 경과규정

구분	경과규정	
	IFRS S1	IFRS S2
비교정보	최초 적용일 이전 비교정보에 대한 미공시 허용	
보고시기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관련 재무제표 발행 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보고를 허용 (1) 기업이 중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다음 2분기 또는 반기 일반목적 중간재무보고서와 동시에 보고 (2) 기업이 자발적으로 중간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2분기 또는 반기 일반목적 중간재무보고서와 동시에 보고 (다만,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9개월 이내여야 함) (3) 기업이 중간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9개월 이내에 보고	
공시주제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는 것을 허용	
GHG 배출량 측정 방법		기준서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에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2004)'외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해당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용
Scope 3 GHG 배출량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기업의 Scope 3 배출량(금융 배출량 포함) 미공시 허용

3.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개요

- **공식명칭:**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EU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 **주관단체/위치/설립연도:**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 벨기에 / 2001년
- **발표일:** 2023년 6월
- **목적:** 기업이 『EU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준비하고 공개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

기본 구조

ESRS		
▼		
ESRS 1 General requirements(일반요구사항)		공개 요구사항, 정보의 특성, 이중 중대성, 지속가능성 실사 가치사슬, 보고 기간, 정보 준비, 연결 정보, 규정
ESRS 2 General disclosures(일반공개사항)		거버넌스, 전략, 영향/리스크 및 기회관리, 지표 및 목표
주제 별 ESRS	ESRS E 1-5 Environment(환경)	E1 기후변화 E2 오염 E3 물과 해양자원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E5 자원사용과 순환경제
	ESRS S 1-4 Social(사회)	S1 자체 인력 S2 가치사슬 내 노동자 S3 영향권 내 지역사회 S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ESRS G1 Governance(거버넌스)	G1 비즈니스 수행

※ 2023년 12월 현재 ESRS 공식 한국어판이 발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핸드북의 ESRS 문구 및 내용은 연구진이 임의 번역한 내용임

요구사항

- ESRS 기준을 따르는 보고서의 명칭은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Statement)'로 함
- 기업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된 영향, 위험 및 기회에 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영향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식별된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결된 지속가능성 관련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의미함. 위험 및 기회는 재무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식별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위험 및 기회를 의미함
- 기업은 경영 보고서의 일부로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지속가능성 정보는 중대성에 따라 보고 영역을 다루어야 함
- 공개요구사항에 따라 정보를 구성하고 공개해야 함

정보의 특성

- **관련성:**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련이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충실성:** 정보가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함
- **비교 가능성:** 이전 기간의 정보, 다른 기업의 정보와 비교 가능해야 함
- **검증 가능성:** 이해관계자들이 충실한 정보라는 점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함
- **이해 가능성:** 명확하고 간결하며 합리적인 정보·지식을 제시해야 함

중대성 평가 및 이중 중대성

- 중대성 평가는 기업이 보고할 중대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데 필요함
- 중대성 평가는 영향 중대성과 재무 중대성 두 가지 차원이 있으며 상호 연관되어 있음
- 중대성 평가의 범위는 기업의 자체 활동 및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임
- 중대성 평가는 임계값을 요구함
- 영향 중대성 평가
 - 정의: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단·중·장기적으로 사람, 환경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찾아내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함

3. ESRS

- 도출 방법: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정의된 지속가능성 실사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해야 함. 중요도는 규모, 범위, 회복 불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 함
- 재무 중대성 평가
 - 정의: 단·중·장기적으로 현금 흐름, 재무 상태 및 재무 성과를 포함하여 기업의 발전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함
 - 도출 방법: 비즈니스 모델, 전략, 보유자산, 금융 접근성 및 자본 비용과 관련되어 미래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상의 지표들과 영향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지속가능성 이슈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함. 국제기구, 글로벌 금융기관/평가사 등에서 제시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 세분화
 - 국가별, 중요한 지역(부동산, 자산의 위치)별로 세분화할 수 있음

지속가능성 실사

- 정의: 기업의 비즈니스가 환경 및 사람(특히,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예방·완화 및 설명하는 프로세스이며, 기업이 자체 운영을 통해 직접 발생시키는 영향 뿐만 아니라 사업 관계(가치사슬), 제품, 서비스를 통해 발생시키는 직·간접적인 영향도 포함됨
- 관행 정착: 지속가능성 실사는 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관계, 운영, 구매 및 판매 과정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상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실사의 방식과 과정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을 참고할 수 있음
- 우선 순위: 기업이 모든 영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실사 프로세스를 통해 영향의 현재적 심각성과 위험 발생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실사는 거버넌스, 전략,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되어야 함
- 지속가능성 실사는 이해관계자의 교류·소통·참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
- 지속가능성 실사 프로세스를 공개해야 함
- 지속가능성 실사를 통해 파악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비즈니스 모델의 상호작용을 공개해야 함

가치사슬

- 기업의 재무제표와 보고의 범위가 부합되어야 함. 연결재무제표를 보고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회사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보고 범위는 기업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기업의 가치사슬(업 스트림 & 다운 스트림) 전체의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보고에 통합해야 함
-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 사슬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대성 평가를 할 때 가치사슬에 대한 이중 중대성(영향, 위험과 기회)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 지분구조에 따른 관계사나 합작회사가 가치사슬의 일부인 경우 지분 비율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 사슬의 제품과 서비스 관점에서 중대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가치사슬 전체의 정보를 수집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확보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균을 내거나 샘플 정보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음. 가치사슬의 정보를 추정할 경우 추정된 방법을 제시해야 함

보고 기간

- **보고 기간:** 재무제표 보고 기간과 일치해야 함
- **과거, 현재, 미래:** 과거와 현재 데이터, 미래 예측 데이터 간의 연결 관계를 설명해야 함
- **기준연도 대비:** 기업이 숫자 목표를 정할 때 기준연도를 제시해야 함
- **단기:** 재무제표 보고 기간 / **중기:** 5년 / **장기:** 5년 이상

정보공개

- 기업은 현재 보고 정보와 비교할 수 있는 최소 1년간의 과거 정보를 공개해야 함. 과거 비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전년도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와 다를 경우 달라진 이유와 수정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시나리오를 포함한 추정 정보의 경우 추정된 방법과 근거 자료를 명시해야 함
- 과거에 제시한 목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목표가 수정될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종속회사 또한 중대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종속회사의 중대성 평가 결과 또한 자회사의 중대성 평가에 포함해야 함
- 지속가능성 보고서 외에 기업의 다른 보고서들과 정보가 일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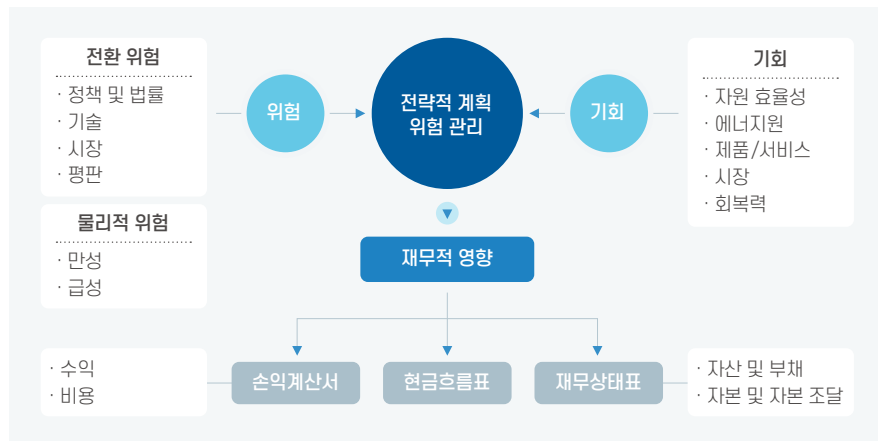
4.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개요

- **공식명칭:**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 포스
- **주관단체**
- 2015년~2023년: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전위원회) + G20 재무장관 위원회
- 2024년 이후: ISSB로 이관 예정
- **발표:** 2017년 6월
- **맥락 및 목적**
-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전후로 G20 재무 장관회의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적절히 평가하고 위험 비용을 책정하기 위한 정보 식별·보고 프레임 개발을 FSB에 요청 → 2016년 12월 초안 공개 → 2017년 6월 TCFD 권고안 발표
- 기후변화가 세계경제 및 금융에 미칠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개별 기업 또는 기관/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도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보고 프레임

기본 구조



구분	이슈	내용
전환 위험	정책 및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인상, 탄소세 부과, 배출량 보고 의무 강화 등 탈탄소경로의 전환 정책, 법률 변화에 따른 위험
	기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생태계 보호 등 친환경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발생하는 부담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
	시장	전반적인 에너지/원재료/물류/인건비 등 비용 상승, 고객의 친환경 구매 성향 증가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위험
	평판	친환경 비즈니스 및 기업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반대급부 발생에 따른 기업 평판 관리 위험
물리적 위험	급성	이상기후, 기온 상승/하락, 태풍, 폭우, 폭설, 가뭄, 해일, 감염병 증가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긴급한 물리적 위험
	만성	평균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감염병 반목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물리적 위험
기회	자원 효율성	원자재, 에너지,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 운용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기회
	에너지원	신재생 에너지원 사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사업과 시장 진출, 제도적, 금융적 지원 등의 기회
	제품/서비스	저탄소,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확대에 의한 고객 수요 창출, 신시장 진출, 제도적, 금융적 지원 등의 기회
	시장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필요하거나 선호하는 시장, 고객에 대한 진출 및 접근 등의 기회
	회복 탄력성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사슬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물리적 대응력 강화 또는 기회 요인 활용이 기업 경영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 주는 기회

4. TCFD

정보공개 프레임



거버넌스

• 개요 및 맥락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기후변화 이슈를 감독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사회의 결정을 실행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역할이 중요함.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이 기후변화에 실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감안하여, TCFD는 조직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지 공개할 것을 권고함

• 정보공개 요구 사항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에 대해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에 관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협의 및 소통 방식을 설명할 것

경영 전략

• 개요 및 맥락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식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사업, 경영전략 및 재무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이를 감안하여, TCFD는 이러한 경영전략 평가가 어떻게 기존의 사업 전략에 반영되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권고함

• 정보공개 요구 사항

- 조직이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파악한 기후 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설명해야 함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경영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함
- 조직의 경영전략이 2°C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함

2°C 이하 시나리오

- 시나리오 분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양한 미래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발견하고 가능하기 위한 전략분석 프로세스이자 방법임
- 2°C 이하 시나리오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TCFD 기본 분석 구조의 항목(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회, 전략적 계획 및 위험관리, 재무적 영향) 별로 시나리오 분석 내용을 제시하는 것임

4. TCFD

위험관리

• 개요 및 맥락

이해관계자는 조직이 전반적 위험 관리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확인·평가·관리하는지 알아야 함. TCFD는 조직이 내부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관리와 개선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공개할 것을 권고함

• 정보공개 요구 사항

- 기후변화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절차를 설명해야 함
- 기후변화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절차를 설명해야 함
- 기후변화의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는 조직의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해야 함

지표/목표 설정

• 개요 및 맥락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이 마련한 지표·목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잠재적 위험이 반영된 수익 현황, 부채 상환 능력,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노출 정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관리 및 적응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따라, TCFD는 조직이 관련 지표·목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권고함

• 정보공개 요구 사항

- 조직이 경영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를 설명해야 함
- Scope 1, Scope 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설명해야 함
-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 목표 달성도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채택한 목표를 설명해야 함

5.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개요

- **공식명칭:**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자연관련 재무적 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 **창립/주관단체:** UNDP, UNEP FI, GEF, WWF, Global Canopy 등
- **발표:** 2023년 9월
- **맥락 및 목적**
 - 2020년 7월 TNFD 설립 이니셔티브 발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자원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연기금 투자 등 전 세계 재무 흐름의 방향을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21년 6월 공식 출범(G7, G20 재무장관회의의 승인)
 - 2023년 9월 공식 권고안 및 추가 지침 발표

TNFD 공시 권고안의 특징

- TCFD 및 ISSB와 동일하게, 투자자가 투자 결정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TCFD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프레임(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과 동일한 프레임 채택
- GRI 및 ESRS와 동일하게, '영향(Impact)'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TCFD 공시 권고안 중 자연 관련 이슈 11개의 권고안과 동일
- 기후변화를 넘어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가 식별한 자연 변화 이슈 영역을 모두 포함 (토지, 해양, 담수, 대기)
- TNFD 권고사항은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BGF)의 4가지 목표와 23가지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전 세계 정부가 BGF 목표 15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2023년 12월 현재 TNFD 공식 한국어판이 발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핸드북의 TNFD 문구 및 내용은 연구진이 임의 번역한 내용임

5. TNFD

TNFD 공시 권고안

거버넌스	전략	위험&영향 관리	지표&목표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에 대한 조직의 거버넌스 공개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가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공개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관리하는 데 사용된 방법 제시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관리하는 데 사용된 지표와 목표 공개
▼	▼	▼	▼
공시 권고안			

<p>A.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 감독 기능 설명</p>	<p>A. 조직이 식별한 단기, 중기, 장기적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를 설명</p>	<p>A. (i) 조직의 직접 운영 부문에서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화 하는 과정을 설명</p>	<p>A. 전략, 위험 관리 과정에 의거해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한 지표를 공개</p>
<p>B.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를 평가, 관리하는 경영진 역할 설명</p>	<p>B.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가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가치 사슬, 전략, 재무 계획, 이뿐만 아니라 전환 계획 또는 분석에 준 영향들을 기술</p>	<p>A. (ii) 조직의 가치사슬 내 업 스트림 및 다운 스트림에서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화하는 과정을 설명</p>	<p>B. 자연 의존도와 영향을 평가, 관리하는 데 사용한 지표를 공개</p>
<p>C.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에 대한 조직의 평가 및 대응 과정에서 원주민, 지역사회, 영향을 받는 사람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인권 정책 및 참여 활동,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감독을 설명</p>	<p>C.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자연 의존에 의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 전략의 탄력성 설명</p>	<p>B.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를 관리하는 과정을 설명</p>	<p>C.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를 관리하는데 사용한 지표와 목표를 공개, 또한 목표 대비 실제 성과에 대해 설명</p>
	<p>D. 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자산과(또는) 사업 활동의 소재지를 공개(가능하다면 가치사슬 내에서 우선 순위 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업 스트림 및 다운 스트림 공개)</p>	<p>C. 자연 의존에 대한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화, 관리하는 과정이 조직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과정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p>	

‘자연(Nature)’의 개념과 범위

- **자연(Nature):**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와 그들 간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자연적 세계
- **자연의 영역(Realms of nature):** 구성과 기능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자연 세계의 주요 구성 요소. 토지, 해양, 담수, 대기로 구분할 수 있음
- **환경 자산(Environmental assets):**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구의 생물/비생물 구성요소. 생물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며 인간에게 이익을 제공함
-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 생태계의 기여. 경제적으로나 인간의 활동에 이익을 주는 생태계의 기여를 의미함

자연 의존도(Nature-Related Dependencies)와 영향(Impacts)의 개념

- **자연 의존도:** 인간 또는 조직이 각각 기능하기 위해 환경 자산 및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
- **영향:** 자연의 질적·양적 변화를 의미. 자연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의 능력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영향동인(impact drivers)**
 - 조직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측정 가능한 양의 자연자원(ex. 전기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 비즈니스 활동으로 생성되었으며 측정 가능한 비생산적인 산출물(ex.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
 - 5가지 카테고리: 기후변화, 토지/담수/해양 사용에 따른 변화, 자원사용/보충, 오염/오염제거, 침입 외래종 유입/제거

5. TNFD

자연 관련 이슈(Nature-Related Issues)의 의미

• 자연 관련 위험(Nature-Related Risks)

- 조직과 사회가 자연에 의존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① 물리적 위험

- 자연 파괴와 이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에 대한 위험
- 건강하고 기능적인 생태계를 지원하는 (비)생물학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
- 급성과 만성적 위험으로 나뉨

② 전환 위험

- 경제 행위자가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며,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조직에 대한 위험
- 규제, 정책, 법적 선례, 기술, 투자자 정서 및 소비자 선호도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
- 정책 위험, 시장위험, 평판 위험, 법적 책임 위험으로 분류됨

③ 시스템적 위험

- 전체적 시스템 붕괴로 발생하는 조직에 대한 위험

• 자연 관련 기회(Nature-Related Opportunities)

-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조직과 자연에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내는 활동
- 비즈니스 성과(business performance)와 지속가능성 성과(sustainability performance)로 분류함

LEAP 접근법

- LEAP (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은 조직 내부 실사 평가 프로세스로, 조직이 자연 관련 이슈를 식별·평가·관리·공시하도록 돕는 통합적 평가 접근법임
- 규모, 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 LEAP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조직 내부에 평가 프로세스가 있다면 LEAP의 체크리스트는 참고, 활용할 것을 권장함

STEP 1

SCOPING - 범주 정하기

- 조직 내부에서 LEAP 접근법을 활용하려면, 경영진과 평가의 목적, 산출물, 일정, 소요 예산 등을 합의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할 것을 권장함
- 잠재적인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위해 내·외부 데이터와 자료들을 높은 수준에서, 신속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 기술 및 데이터 격차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LEAP의 범주를 확정할 것을 권장
- **핵심 질문 1**
 - 가설 세우기: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활동 중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가 중요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 **핵심 질문 2**
 - 목표와 자원 연계: 현재의 능력, 기술, 데이터와 조직의 목표를 고려할 때, 어떤 자원(재무적, 인적, 데이터)이 필요하고, 시간 배분은 어떻게 요구, 협의해야 하는가?

5. TNFD

STEP 2

LOCATE - 자연과의 접점 식별

L1.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사슬의 범위 식별

- 섹터별, 가치사슬별, 지역별로 우리 조직의 활동은 무엇인가?
- 직접 운영 지역은 어디인가?

L2. 의존도와 영향 스크리닝

- 자연 의존도와 영향 측면에서 관계성이 잠재적으로 높은(높거나 중간정도의) 섹터, 가치사슬, 직접 운영 지역이 있는가?

L3. 자연과의 접점

- 자연 의존도와 영향 측면에서 관계성이 잠재적으로 높은(높거나 중간정도의) 섹터, 가치사슬, 직접 운영 지역은 어디인가?
- 우리 조직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영역,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의존도를 가지는 영역, 임팩트 가치 사슬 영역들은 어떤 생물군집(biome) 및 특정 생태계와 상호 작용하는가?

L4. 취약 지역과의 접점

- 우리 조직의 중간 및 높은 의존 및 영향 가치 사슬 및 섹터의 활동 중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 민감한 지역에 있는 우리의 직접 운영 사업장은 어디인가?

STEP 3

EVALUATE - 의존도 및 영향 평가

	기업		금융기관
E1. 환경자산, 생태계 서비스 및 영향 동인 식별	- 어떤 섹터,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는 활동들이 분석돼야 하는가? - 이런 섹터, 비즈니스 프로세스, 활동, 평가 지역과 관련된 환경자산, 생태계 서비스 및 영향 동인은 무엇인가?		- 포트폴리오 상에서, 섹터/지역/식별된 민감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활동은 누구인가? - 이런 기업/활동과 관련된 환경자산, 생태계 서비스, 영향 동인들은 무엇인가?
E2. 의존도 및 영향 식별	- 우리의 자연 의존도와 영향은 무엇인가?		- 포트폴리오 내 기업들의 의존도 및 영향에 따른 우리의 자연 의존도 및 영향은 무엇인가?
E3. 의존도 및 영향 측정	시장	- 우리의 자연 의존도의 규모와 범위는 어떠한가?	- 포트폴리오 내 기업들의 의존도에 따른 우리의 자연 의존도의 규모와 범위는 어떠한가?
	평판	- 우리가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은? - 긍정적 영향의 규모와 범위는?	- 우리가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은? - 긍정적 영향의 규모와 범위는?
E4. 영향 중대성 결정	- 식별된 영향 중 어떤 것이 중요한가?		

5. TNFD

STEP 4

ASSESS - 위험과 기회 평가

A1. 위험과 기회 식별

- 우리 조직에 상응하는 위험과 기회는 무엇인가?

A2. 기존 위험 완화 및 위험/기회 관리

- 우리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위험 완화 및 위험/기회 관리 프로세스와 요소는 무엇인가?

- 위험/기회 관리 프로세스 및 관련 요소들(위험 분류법, 위험 목록, 위험 허용 기준)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가?

A3. 위험과 기회 측정 및 우선순위화

- 어떤 위험과 기회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A4. 위험과 기회 중대성 평가

- 어떤 위험과 기회가 중요하며, TNFD 공시 권고에 따라 공개할 것인가?

STEP 5

PREPARE - 대응 및 공시 준비

P1. 전략과 자본배치 계획

- 분석의 결과로 어떤 위험관리, 전략, 자원 배치를 결정해야 하는가?

P2.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그 과정을 측정할 것인가?

P3. 보고서 작성

- TNFD 공시 권고안에 따라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

P4. 공시

- 언제, 어디서 우리의 자연 관련 공시를 진행할 것인가?

6.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개요

- **공식명칭:**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 **제정주체/위치/설립연도:** Value Reporting Foundation / 미국 / 2011년
(※ SASB와 IIRC(통합기준위원회)가 2021년에 Value Reporting Foundation으로 합병하였고, 2022년에는 IFRS와 통합되어 관련 업무를 모두 이양하였음)
- **발표연도:** 2018년
- **기준서 구성:** 개념체계, 적용지침, 총 77개 산업별 기준
- **공시 내용:** 재무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업가치(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기본구조

SASB 기준 개요

공시 주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산업별 공시 주제의 최소 집합과 각 주제의 관리 또는 관리 부실이 가치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
회계 지표	각 주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회계 지표 집합
기술 프로토콜	각 회계 지표별로 정의, 범위, 이행, 취합, 표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술 프로토콜
활동 지표	기업의 사업 규모를 정량화 하는 지표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보고지원센터 및 번역자문위원회가 SASB Conceptual Framework (2017.2) 문서를 번역한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함

6. SASB

지속가능성회계 개념과 지속가능성 범주

- **지속가능성:**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기업 활동
- **지속가능성 회계:** 재화와 용역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환경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리

지속가능성 사안의 유니버스

범주	주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 · 대기질 · 에너지 관리 · 연료 관리 · 물 및 폐수 관리 ·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 생물다양성 영향
사회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및 지역사회 관계 · 접근성 및 적정가격 · 고객 편익 · 데이터 보안 및 고객 프라이버시 · 공정한 공개 및 라벨링 · 공정한 마케팅 및 광고
인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관계 · 공정 노사관행 · 다양성 및 포용성 · 직원 건강, 안전, 복지 · 보상 및 복리후생 · 직원 채용, 개발, 유지
사업 모형 및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와 용역의 수명주기에 걸친 영향 · 자산 및 영업에 미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 · 제품 포장 · 제품 품질 및 안정성
리더십 및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위험 관리 · 사고 및 안정성 관리 · 사업 윤리 및 지급 투명성 · 경쟁적 행위 · 규제포획 및 정치적 영향력 · 자재 조달 · 공급망 관리

SASB 기준의 특징

1) 근거기반(Evidence-Based)

- **지속가능성 주제가 합리적 투자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지에 대한 판단 근거**
 - 재무적 영향 및 위험: 해당 주제 관련 기업 성과가 단기 또는 중기적 재무성과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
 - 법적, 규제적 및 정책적 동인: 기존 규제 또는 변경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규제에 의해 기업 활동과 재무성과가 영향을 받음
 - 산업규범 및 경쟁 동인: 산업 현안에 대한 동료 행동(peer action)과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이 특정 지속가능성 주제의 관리 및 공시와 관련해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과 성과를 요구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우려 및 사회적 동향: 이해관계자가 영업 허가 상실, 평판 훼손, 고객 수요 변화, 사업 실행가능성 상의 차질 등 중장기 재무 또는 영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음
 - 혁신 기회: 산업별 지속가능성 과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제품 및 사업 모형을 통해 시장 확대 촉진, 경쟁 우위의 새로운 원천 제공 등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낸다면 이런 혁신과 관련된 재무적 영향, 위험 요소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음
-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재무적 영향의 근거**
 - 수익/비용: 지속가능성 요소들이 예상 수익, 수익, 시장점유율, 가격 결정력에 영향을 미침. 비용은 영업 효율성,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준수에 필요한 투자, 원자재나 기타 생산 투입요소의 가용성 또는 가격의 영향을 받음
 - 자산/부채: 지속가능성 요소들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영향을 미침
 - 자본비용/위험 프로파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 가치평가는 자본비용의 증가나 자본에 대한 접근 제한을 통해 지속가능성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6. SASB

2) 시장정보 기반(Market-Informed)

- SASB 제정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주제의 어떤 측면이 표준화된 공시를 보장하고, 표준화를 위해 그러한 측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기술하며 측정할 것인지 고려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함
- 다만 SASB의 핵심 목표인 금융자본의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하며 비용 효과적 공시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기반으로 함

3) 산업 특유(Industry-Specific)

- 한 산업 내에서 자원의 사용, 사업 모형, 기타 작용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 중점을 두고 해당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을 개발함
- 기존의 SASB 산업분류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SICs®을 개발함(2018.10). 이 체계에서는 사업 모형, 자원 집약도, 지속가능성 영향, 지속가능성 혁신 잠재력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에 따라 부문 및 산업이 분류됨

주제 선정 원칙

1)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자본비용 또는 위험 프로파일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영업 및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주제를 파악

2) 투자자 관심도

- 다섯 가지 요소(직접적인 재무적 영향 및 위험, 법적/규제적 및 정책적 동인, 산업 규범/모범사례/경쟁 동인, 재무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해관계자 우려, 혁신 기회)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 영향을 통해 전체적 맥락에서 지속가능성 주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투자자가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을 고려함

3) 동일 산업 내 전반적 관련성

- 한 산업에 체계적인 주제 및/또는 그 산업에 고유한 위험과 기회를 대표하는 주제로서 그에 따라 해당 산업 내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만한 주제를 다룸

4) 기업의 조치 가능성

-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동향이 개별 기업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특유 주제로 변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

5) 이해관계자(투자자 및 증권발행기업) 합의 반영도

- 각 공시 주제에 대해 해당 주제가 산업 내 대부분의 기업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지 증권 발행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지를 고려함

표준화된 공시의 요소

공시 요소	내용
일반 공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은 증권 발행기업을 위해 범위, 보고 형식, 시기, 제한사항, 미래 전망 등 SASB 기준 활용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 • 공시 지침을 통해 각 산업 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음 • 기업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Form 10-K, 20-F, 또는 기타 SEC 제출 보고서에 공시해 야할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하며, SASB 기준은 기업이 중요성 및 공시 의무에 대한 자체적 판단을 수행함에 있어 활용할 지침이 될 수 있음
산업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의 대상이 되는 산업을 설명
주제 및 주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은 주제별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리 또는 부실 관리로 인해 가치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나열하고 설명함
지속가능성 회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시 주제나 주제의 한 측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량적(또는 정성적) 지표를 기업에 제공함
기술 프로토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AT Section 101에서 정의한 *속성을 갖는 '적합한 판단기준'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 정의, 범위, 회계 지침, 취합, 공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속성: 객관성, 측정가능성, 완전성, 관련성
활동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발행기업의 사업 규모 측정을 위한 활동 지표를 포함

7.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개요

- **공식명칭:**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제정주체/위치/설립연도:** CDP / 영국 / 1998년
- **발표 연도:** 2000년
-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CDP는 조직이 이해관계자들과 환경적 영향에 관련한 소통, 즉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감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금융기관, 구매 조직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취하고, 성과가 좋은 기업에는 보상을,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는 개선 행동을 요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CDP 비전 및 미션

- **비전:** 장기적으로 인류와 지구를 위해 작동하는 번영하는 경제
- **미션:** 우리는 투자자, 기업, 도시, 정부의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고 행동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데 집중한다
- **CDP의 우선 순위:**
 - 1 1.5°C 경로에 맞춰 배출량을 줄인다
 - 2 생태계 건강을 복구한다

CDP 스코어 등급

A부터 D-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며, 기업의 정보 공개 수준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 관리, 리더십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함

- **리더십(A):** 기후변화, 숲, 물에 대한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 리더십을 보유
- **매니지먼트(B-/B):** 비즈니스의 환경 영향을 해결하고 관리 측면에서 우수. 그러나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음
- **인식(C-/C):** 환경 문제가 비즈니스와 어떻게 교차하는지, 사람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사 평가의 포괄성을 측정함

- **공개(D-/D):** 공개한 정보 범위에 한하여 평가. 더 광범위한 정보 세트를 공개할수록 득점할 수 있음.
- **공개 실패(F):**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보를 CDP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기본구조

기업 공시		주제 별 모듈
공시 주제	기후변화	C0 소개 / C1 거버넌스 / C2 리스크 및 기회 / C3 사업 전략 / C4 감축목표 및 성과 / C5 배출량 산정방법 / C6 배출량 데이터 / 7 배출량 세부내역 / C8 에너지 / C9 그 밖의 기후변화 관련 지표 / C10 검증 / C11 탄소가격시스템 / C12 인계이치먼트 / C13 모듈 종속성(일부 섹터 적용) / C15 생물다양성 / C16 최종 서명 / SC 공급망
	숲	F0 소개 / F1 현황정보 / F2 절차 / F3 리스크 및 기회 / F4 거버넌스 / F5 사업 전략 / F6 실행 / F7 검증 / F8 한계요인 / F17 최종서명 / SF 공급망
	물	W0 소개 / W1 현황정보 / W2 비즈니스 영향 / W3 절차 / W4 리스크 및 기회 / W5 사업장 및 시설 물 관련 회계 / W6 거버넌스 / W7 사업 전략 / W8 목표 / W9 검증 / W10 플라스틱 / W11 최종 서명 / SW 공급망

7.CDP

기업 공시 문항 주요 특징

- **CDP 제공 자료:** CDP는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숲/물 각 공시 주제별 문항 예시, 보고 가이드, 평가 방법론 자료를 제공함. 기업들은 이를 참고해 CDP 온라인 응답 시스템(ORS, Online Response System)에 각 기업의 현황을 작성, 제출해야 함
- **섹터 별 문항:** CDP 문항은 일반적 질문과 각 섹터 별 세부 질문으로 구성됨
- **문항지 버전:** 전체 문항 버전(full)과 최소 문항 버전(minimum)이 있으며, 연간 매출이 EUR /US\$250 million 미만인 경우에만 최소 버전을 선택할 수 있음. 최소 버전은 문항 수가 적으며, 섹터 별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문항 업데이트:** CDP는 매년 각 문항지의 내용을 추가, 수정, 삭제하여 버전을 업데이트하며, 전년대비 달라진 문항은 별도 표기, 안내함
- **추가적인 문항 모듈:** 응답 기업은 아래 모듈을 복수로 선택해 응답할 수 있음
 - CDP 핵심 문항 및 섹터 별 문항
 - 공급망 문항 - CDP 핵심 문항 및 섹터별 문항 추가(고객이 요청한 경우 해당)
 - 은행 프로그램 문항 - 추가 문항 없음(은행이 요청한 경우 해당)
 - RE100 이니셔티브 문항 - CDP 핵심 문항 및 섹터 별 문항 추가(RE100 이니셔티브 가입 멤버사의 경우에 해당)
 - Net Zero Asset Managers 이니셔티브 문항 - 추가 문항 없음('기후변화' 문항 및 '금융 서비스' 섹터에만 해당됨. Net Zero Asset Managers 이니셔티브 가입 멤버사의 경우에만 해당)

기업/기후변화 Part 문항 특징

- **문항 설계:** 2018년, 시장의 니즈와 TCFD 권고안을 반영해 전반적인 문항을 재설계함
- **고영향 섹터:** 기후변화 관련 문항에 응답해야 하는 섹터를 총 16개로 설명함
 - 농업: 농산물(AC), 식음료 및 담배(FB), 종이 및 임산(PF)
 - 에너지: 석탄(CO), 전력(EU), 석유 및 가스(OG)
 - 금융: 금융서비스(FS)
 - 소재: 시멘트(CE), 자본재(CG), 화학(CH), 건설(CN), 금속 및 광업(MM), 부동산(RE), 철강(ST)
 - 운송: 운송 서비스(TS), 운송 OEM (TO)

기업/숲 Part 문항 특징

- **NYDF지지:** CDP는 탈산림화 방지를 위한 협력을 지향하는 뉴욕 숲 선언(NYDF, New York Declaration on Forests)을 지지하며, 기업들에게 산림 파괴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산림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권장함(CDP는 NYDF Goal 2, 3과 관련된 기업 데이터를 수집, 공개함)
- **Accountability Framework Initiative(AFi):** CDP는 2022년 6월 Ceres, Global Canopy, WWF 등 국제기구 함께 환경이슈 및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AFi를 출범했음. AFi는 특별히 농업 및 산림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필요한 공통된 개념, 정의, 우수사례 등을 기업들에게 제공함. CDP는 기업들이 AFi를 고려한 환경 정보를 공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CDP 숲 관련 문항에 CDP 각 문항과 AFi 간의 연계성을 안내하고 있음
- **고영향 섹터:** 석탄(CO), 금속 및 광업(MM), 종이 및 임산(PF)

기업/물 Part 문항 특징

- **문항 설계:** 2010년, CEO Water Mandate Guideline의 내러티브를 폭넓게 반영
- **고영향 섹터:** 물 관련 문항에 응답해야 하는 섹터를 총 7개로 설명함
 - 농업: 농산물(AC), 식음료 및 담배(FB)
 - 에너지: 전력(EU), 석유 및 가스(OG)
 - 소재: 화학(CH), 석탄(CO), 금속 및 광업(MM)
- **신규 모듈:** 2023년, 플라스틱 모듈 도입, 모든 섹터 기업의 응답 항목
 - 플라스틱 매핑, 영향 평가, 사업 리스크, 목표 등에 관한 9개 신규 문항 신설

공급망 프로그램

- CDP 공급망 프로그램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사는 CDP를 통해 공급망 내 주요 공급업체에게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CDP는 매년 축적된 공급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사에게 분석결과 및 인사이트를 제공함
- 2023년 기준 34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음(로레알, 마이크로소프트, 레고 그룹, 골드만삭스 그룹, 델 테크놀로지 등)

8. UNGPs

UN Guiding Principles Reporting Frameworks

개요

- **공식명칭:** UN Guiding Principles Reporting Frameworks / UN 이행 원칙 보고 프레임워크
- **제정주체:** UN 인권이사회
- **발표연도:** 2011년
- **구성:** 인권 존중 거버넌스, 보고 초점, 주요 인권 이슈 관리
- **제정 목적:**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지침 구성

Part	정보 공개 질문
A 거버넌스	<p>< 정책 약속 ></p> <p>A1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p> <p>A1.1 공개적인 약속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p> <p>A1.2 공개적인 약속은 누구의 인권을 다루고 있는가?</p> <p>A1.3 공개적인 약속은 어떻게 전파되는가?</p> <p>< 내재화 ></p> <p>A2 기업은 인권 존중 약속 이행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p> <p>A2.1 기업 내에서 인권 수행에 대한 일상적인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A2.2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A2.3 직원과 계약직 근로자는 인권 존중 이슈와 관련하여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p> <p>A2.4 기업은 사업 관계에서 인권 존중에 중요성을 어떻게 명확히 하고 있는가?</p> <p>A2.5 기업은 보고 기간 동안 인권 존중 이행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었으며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가?</p>

Part	정보 공개 질문
B 보고 초점	<p>B1 중요한 문제 기술: 보고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활동 및 사업 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인권문제를 기술해야 함</p> <p>B2 중요한 인권 문제 결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중요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설명해야 함</p> <p>B3 중요 지역의 선택: 두드러진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가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p> <p>B4 추가적인 심각한 영향: 보고 기간 동안 발생했거나 여전히 해결 중이지만 중요한 인권 문제 외에 또 다른 인권 이슈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야 함</p>
C 주요 인권 이슈 관리	<p>< 구체적인 정책 ></p> <p>C1 기업의 중요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p> <p>C1.1 기업은 인권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의 목적 적합성과 유의성을 어떻게 명확히 이해시키고 있는가?</p> <p>< 이해관계자의 참여 ></p> <p>C2 중요한 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기업의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p> <p>C2.1 기업은 각 중요 이슈와 관련하여 어떤 이해관계자와 언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가?</p> <p>C2.2 보고 기간 동안 기업이 각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이해 관계자와 접촉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C2.3 보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각 중요한 문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p>

8. UNGPs

Part	정보 공개 질문
<p>C 주요 인권 이슈 관리</p>	<p>< 영향 평가 > C3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한 인권 이슈의 본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C3.1 보고 기간 동안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영향에 주목할 만한 경향이나 패턴이 있었는가? 있다면 그것들은 무엇인가? C3.2 보고 기간 동안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였는가? 발생한 경우 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p>
	<p>< 조사결과 통합 및 조치 > C4 기업은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사 결정 과정과 행동에 어떻게 통합하는가? C4.1 중요한 문제 관리에 관한 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 파트들은 해결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데 어떻게 참여하는가? C4.2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영향의 예방 또는 완화와 다른 비즈니스 목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때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C4.3 보고 기간 동안 기업은 중요 이슈와 관련된 잠재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p>
	<p>< 성과 추적 > C5 각각의 중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효과적인지 기업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C5.1 보고 기간 동안 중요 문제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p>

Part	정보 공개 질문
<p>C 주요 인권 이슈 관리</p>	<p>< 교정 조치 > C6 중대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의해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경우, 기업은 어떻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가? C6.1 기업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각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불만이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가? C6.2 기업 입장에서 사람들이 불만이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C6.3 기업은 불만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조치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는가? C6.4 보고 기간 내 발생한 중요 문제에 대한 불만 및 우려사항의 패턴 및 경향은 어떠한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 기업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C6.5 보고 기간 동안 기업은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실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는가? 대표적이거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예시는 무엇인가?</p>

9. SEC

Proposal f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개요

- **공식명칭:** SEC proposal f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관련 공시 제안
- **제안 주체:** 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제안 연도:** 2022년
- **구성:** 재무제표 각주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공개, 거버넌스, 필수 공개의 위치, 시기 및 적용 가능성, 증명 요구 사항, 제안된 규칙의 단계적 도입 기간
- **제안 목적:** 미국 증권시장 상장사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증권등록 명세서 및 정기 보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
- **향후 진행:** 2023년 12월 현재 Scope 3 공개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논의 진행 중

주제	정보 공개 요구 사항
재무제표 각주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악천후 및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금액이 항목별 1%를 초과할 경우 그 항목의 각주에 그 내용과 설명 제시 • 심각한 기상 현상과 기타 자연조건 및 전환 활동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된 지출을 해당 지출 항목 각주에 설명 제시 • 심각한 기상 현상화 기타 자연조건 및 전환 활동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 및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 제시
온실가스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e 1, 2 배출량: 온실가스 종류별로 분류되어 총량 및 배출강도 (예:수익 1달러당 배출량 등)를 공개해야 함. 배출량은 제3자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함 • Scope 3 배출량: 배출 및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경우, 총량 및 배출 강도를 공개해야 함. (객관적인 제3자 검증 예외, 추정치 반영 가능, 소규모회사 예외)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와 경영진이 기후 관련 위험과 위험 관리 프로세스, 대응 활동을 감독하는 내용과 방법

주제	정보 공개 요구 사항
질적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위험이 어떻게 (1)사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2)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 • 기후 관련 위험을 감지, 평가,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이러한 프로세스가 광범위한 위험 관리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 • 탄소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 탄소 가격에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여 기후 관련 위험의 맥락에서 비즈니스 평가를 하는 경우 시나리오의 가정 및 예상 재무 영향에 대한 설명 제시 • 전환 계획을 채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한 설명과 관련 목표 및 지표 • 기후 관련 목표를 공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함된 활동 범위, 예상된 기간 및 설정된 임시 목표 - 목표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 - 목표 또는 목표 실행의 연단위 내용과 성과 - 목표 달성 방법 중 상쇄 또는 REC가 사용되었다면 상쇄 방법과 REC에 대한 정보
공개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보고서, 증권등록 명세서
증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각주 설명은 기존 재무제표 감사 요구사항 적용 • Scope 1, 2는 도입단계에서 제3자의 제한된 검증 이후 합리적 검증 전환
단계적 도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2월 현재 Scope 3 공개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논의 진행 중

ESG INFORMATION DISCLOSURE

PART 2 환경 영역 정보공개



- 1. 기후위기/온실가스
- 2. 순환경제/자원순환
- 3. 수자원/천연자원 사용
- 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 5. 환경오염 방지/유독물질 관리
- 6. 폐기물
- 7. 공급망 환경영향 관리

본 핸드북은 주요 ESG 정보공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주제(이슈)를 중심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설명과 정보공개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범위, 용어, 내용,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기후위기/온실가스

개요

- 2015년 파리기후협약 후속 조치에 따라 ESG 정보공개에서 가장 빠르게 의무화되고 있는 주제로, 기업이 가치사슬 전체(Scope1, 2, 3)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고, 공개하도록 함. 기업은 감축 성과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CDP	SEC
1.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체계	●	●	●	●	●	●
2. 기후위기 대응 위험 및 기회 분석	●	●	●	●	●	●
3. 기후위기 대응 목표와 전략	●	●	●	●	●	●
4. 기후위기 대응 실행 방법 및 성과	●	●	●	●	●	●
5.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	●	●	●	●	●
6.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	●	●	●	●	●
7.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	●	●	●	●
8. 에너지 사용량	●	●	●	●	●	●
9. 에너지 사용 감축량	●	●	●	●	●	●

1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체계

• 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이상기후, 기온 상승 및 하락, 태풍, 폭우, 폭설,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감염병 증가 등이 기업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함

• 거버넌스

- 기업의 경영 원칙과 목표, 전략 등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의사 결정 및 실행 체계

•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체계

- 기후위기로 인해 기업에게 닥칠 부정적 영향 또는 긍정적 기회를 기업의 의사결정과 실행에 반영하고 있는 구조와 방식

- 원칙과 정책: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함

- 이사회: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권한, 책임,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 경영진과의 협업 구조와 방식을 설명해야 함

- 경영진: CEO를 비롯해 고위 경영진이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권한, 책임, 가지고 있는 지, 이사회 및 실무진과의 협업 구조와 방식을 설명해야 함

- 실무진: 기업의 위험관리 실무체계가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권한, 책임,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와 방식을 설명해야 함

구분	조직	역할	책임/권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이사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원칙/정책/목표/전략 승인, 성과관리	최고 의사결정, 경영진 관리 감독
경영진	CEO 경영진 협의체	기후위기 대응 실무 의사결정, 이사회 보고, 실무진 및 성과 관리	실무 의사결정, 실무진 관리 감독
실무체계	위험관리 부서 각 실무부서	위험관리체계와 기후위기 대응 체계 통합, 실무부서별 기후위기 대응 목표, 실행 방법 수립 및 실행, 성과 측정 및 보고	실무 실행

1. 기후위기/온실가스

2 기후위기 대응 위험 및 기회 분석

• TCFD 전환/물리적 위험 & 기회

- TCFD가 제시하는 전환위험, 물리적 위험 및 기회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공개 함

• 재무 및 비재무적 위험과 기회

- 기후위기로 인한 기업의 위험 및 기회를 재무, 비재무적 위험과 기회로 분석해 제시할 수 있음

• 원칙, 목표, 전략 수립의 근거

- 기후위기 대응 위험 및 기회 분석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원칙, 목표, 전략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됨

영역	구분	예시
위험	재무적	· 세금: 탄소세 부과,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세금 발생
		· 좌초 자산: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생산, 운송, 이용하는 공장, 시설, 설비 등의 가치 하락으로 손실 발생
기회	비재무적	· 재해 피해: 자연재해 등으로 공장, 시설, 설비 등이 피해를 입는 경우, 수리 및 복구 비용 발생
		· 원가 및 비용 상승: 원재료,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비용 상승 또는 손실 발생
		· 금융조달 비용 상승: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탄소 감축을 하지 못할 경우 대출, 채권 발행 등에 추가 비용 발생
		· 보험료 상승: 자연재해 증가 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자산 및 인력 등에 대한 위험 보험료의 상승
		· 거래 기회 상실: 탄소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탄소배출정보 공개 등이 거래의 기본 조건이 되는 국가조달, 기업거래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영역	구분	예시
위험	비재무적	· 제도적 압력: 국가, 지자체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 특히 EU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압박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
		· 평판적 압력: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회이슈가 됨에 따라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의 사회적 평판이 하락할 수 있음
기회	재무적	·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재무적 위험의 전반적인 내용이 재무적, 비재무적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음
	비재무적	

3 기후위기 대응 원칙과 목표

• 기후위기 대응 원칙/내규/행동강령

- 인식 공표: 기후위기 문제를 경영의 중대한 위험과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림

- 원칙/내규/행동강령: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경영 대한 원칙(principle)을 제정하고 실무현장의 실행을 위한 내규(rule)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들어 공표하고 이를 내재화 함

• 기후위기 대응 목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화석 에너지/원료 사용 감축, 원시림 보호, 토양보호, 수자원보호 등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활동과 목표를 제시함

• 기후위기 적응 목표

-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여 발생한 위험에 적응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함

- 자연재해 발생, 물 부족, 원재료/에너지 가격 상승, 이상 기온, 폭우/폭설, 태풍, 해수면 상승, 세금 및 금융비용 상승 등이 실제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활동과 목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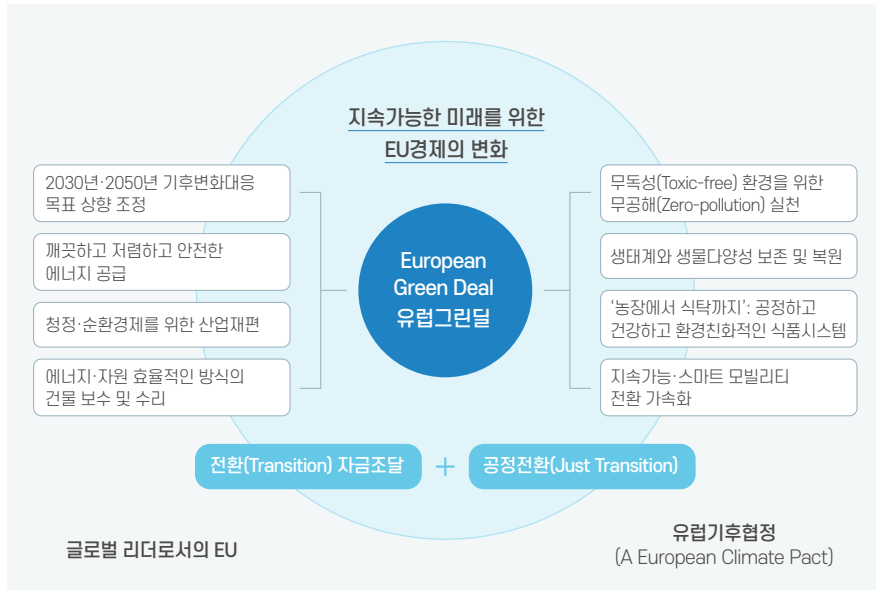
1. 기후위기/온실가스

4 기후위기 대응 전략 및 실행 성과

• 기후위기 대응 전략(EU 그린 딜 전략)

- 2019년 EU는 파리기후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8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음. 8가지 전략 중 아래에 제시한 5가지 전략이 기후위기 및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EU에 속한 기업 및 EU와 거래하는 기업은 EU 그린 딜 전략을 실행해야 하며, EU와 관련 없는 기업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함

< 참고 > 유럽그린딜 정책개요



* 자료원: EU집행위

1 2030년, 2050년 기후변화 대응 목표 상향 조정

- Net-Zero를 2050년에 달성하는 것으로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감축 목표와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함
- 기업은 Net-Zero 2050 목표를 따를 수도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경우 EU의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음

2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및 사용 확대

-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바이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발전을 확대함
- 기업은 생산시설 유휴공간, 소유 부지, 주차장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도입하고 직접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 신재생 에너지 발전 투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입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3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재편

-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폐기물 감축, 순환경제 확대
- 기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원재료 사용을 늘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순환 방식으로 전환하여 제품의 사용 기간을 늘리고 수리, 재활용, 재생 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4 에너지, 자원 효율성 제고와 건물(시설, 장비) 보수 및 수리

- 에너지,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며 이를 위해 건물, 시설, 장비를 에너지 고효율 방식으로 수리, 교체, 업그레이드 해야함
- 기업은 생산 시설과 장비, 건물 등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신기술/소재 개발을 통해 이에 기여해야 함

5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 화석연료를 이용한 내연기관 운송수단(비행기, 기차, 자동차, 중장비 등)을 신재생 발전으로 충전한 전기 운송수단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내연기관의 연료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 연료 등으로 교체함
- 기업은 생산, 운용, 이용하는 운송수단과 연료를 친환경 운송수단과 원료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야 함

1. 기후위기/온실가스

• 기후위기 대응 실행 성과

- 기후위기 대응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여 기후위기 대응 원칙,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 계획과 투자계획 등에 반영하여 실행한 성과를 공개함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사용 감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사용 확대, 자원사용 감축,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원재료 및 재생 자원 사용 확대, 폐기물 발생량 감축, 폐기물 자원 순환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공개할 수 있음
- 실행 성과는 정성적 성과 보다는 정량적 성과로 공개하는 것을 추천 함

5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 6대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 SCOPE 1

-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계 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 예: 공장 보일러, 차량, 화학반응, 공정배출, 소각 등

• SCOPE 2

- 기업이 구매 또는 취득한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 예: 기업 외부 발전소, 스팀 생산공장 등

• 배출량 측정방법

- 직접 측정: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지점에 측정기를 설치하여 직접 측정
- 간접 측정(환산): 배출 발생 활동(연료 사용량 등) X 환산 계수
※ 예: 전력 사용량(MWh/년) X 환산 계수(tCO₂eq/MWh)
※ 간접측정 방법 및 환산 계수는 한국에너지공단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 정보시스템 (<https://min24.energy.or.kr>)에서 관련 자료 참고

• 배출량 공개 방법

- 온실가스별 공개: 6대 온실가스 종류별로 공개하는 방법
- 이산화탄소 환산량 공개: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를 1로 산정하여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
※ GWP 지수: 메탄(CH₄)=21, 아산화질소(N₂O),=310, 수소불화탄(HFCs)=140~11,700, 과불화탄소(PFCs)=6,500~9,200, 육불화황(SF₆)=23,900

• 배출량 검증 방법

- 제3자 검증: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사업체에 의뢰하여 배출량 검증 후 검증결과 및 의견서를 받을 수 있음

6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 SCOPE 3

-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량 계산방법

- 가치사슬 업 스트림(upstream) 배출량 + 다운 스트림(downstream) 배출량

• 업 스트림

- 원부자재 구매: 구매 또는 취득한 재화 및 용역의 추출, 생산 및 운송에 따른 배출량
- 자본재 구매: 회사가 구입하거나 취득한 자본재의 추출, 생산 및 운송에 따른 배출량
- 연료 및 에너지 사용: 구매 또는 취득한 연료 및 에너지의 추출, 생산 및 운송에 따른 배출량
- 원부자재 운송: 구매한 제품을 기업의 공급업체와 자체 운영업체 간 운송 및 유통 또는 구매한 운송 서비스의 배출량
- 폐기물: 보고 사업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분 및 처리에 따른 배출량
- 출장: 비즈니스 관련 임직원 운송에 따른 배출량
- 통근: 자택과 작업장 사이의 직원 운송에 따른 배출량
- 임대자산: Scope 1, 2에 속하지 않은 임차 자산에 따른 배출량

1. 기후위기/온실가스

• 다운 스트림 배출량

- 운송과 유통: 사업장과 최종소비자 사이의 제품의 소매 및 보관을 포함한 운송 및 유통에 따른 배출량
- 판매 제품 가공: 판매된 중간 제품의 다운 스트림 업체별 처리에 따른 배출량
- 판매 제품 사용: 판매한 재화 및 용역의 최종 사용에 따른 배출량
- 판매 제품 폐기처리: 수명이 다한 제품의 폐기물 처분 및 처리에 따른 배출량
- 임대 자산: Scope 1, 2에 속하지 않은 임대해 준 자산에 따른 배출량
- 가맹점 영업권: Scope 1, 2에 속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배출량
- 투자: Scope 1, 2에 속하지 않은 투자에 따른 배출량

• 배출량 검증

- Scope 3는 Scope 1, 2에 비교해 데이터 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고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형식 검증은 가능하나 정확한 검증은 어려운 상황임

7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기업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해당 연도 감축량

• 감축량 계산식

- 감축량 = 기준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정보공개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 Net-Zero 2050 목표: 기업이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6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10년 단위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 공개하는 것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목표: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로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공표했으며, 40% 중 11.4%를 산업 분야에서 감축해야 함. 감축 목표가 없는 개별 기업은 NDC에 따라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 있음

- 개별 기업의 목표: 기업이 파리기후협약 또는 NDC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공개할 수 있음

8 에너지 사용량

• 에너지 사용량

- 기업이 사용한 에너지(연료, 전기 등) 사용량의 총합

• 에너지 사용량 계산식

- 에너지 사용량 = 비재생에너지 사용량 + 재생에너지 사용량

• 비재생 에너지

- 화석연료: LNG, LPG, 휘발유, 경유, 등유, 유연탄, 무연탄 등
- 전기에너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발전한 전기 에너지

• 재생 에너지

- 재생연료: 폐목재, 우드칩,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매탄 등 재생순환 연료
-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공정 중 자체순환 폐열 등

9 에너지 사용 감축량

• 에너지 사용 감축량

- 기업이 정한 에너지 감축 목표와 해당 연도 감축량
- 주로 화석연료 및 화석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 사용 감축량을 공개하고 있음

• 감축량 계산식

- 감축량 = 기준 연도 에너지 사용량 - 정보공개 해당 연도 에너지 사용량

• 에너지 사용 감축 목표

- Net-Zero 2050, NDC 등을 실행하기 위해 기업이 정한 에너지(주로 화석 연료, 화석 에너지) 사용 감축 목표

2. 순환경제/자원순환

개요

- 원재료를 채취하여 상품으로 가공한 후 판매하여 사용한 후 폐기(소각, 매립)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방식은 유한한 지구자원의 소모와 환경오염을 가속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한편 채취한 원재료를 가능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재활용, 재생, 재가공하는 방식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방식이 지속가능경영에 적합한 방식이며 기업은 자원순환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그 성과를 공개해야 함.
- 순환경제를 구성하는 영역은 재생에너지, 생물자원, 광물자원, 수자원 등 네 가지임
 - 에너지: 자원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원(바이오 가스, 폐열, 폐온수 등)
 - 생물: 음식폐기물 자원화(퇴비, 바이오가스 등), 펄프 폐기물(재생종이 등), 목재폐기물(바이오매스, MDF합판 등), 동/식물 폐기물(바이오가스, 퇴비 등) 자원화
 - 광물: 광물(석유, 석탄, 가스, 금속, 석재 등), 화학가공물(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재가공을 통한 자원화
 - 수자원: 강, 호수, 빗물, 지하수, 바다 등에서 취수 한 물 재사용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CDP	SEC
1. 재생자원 사용량	●	●	●		●	
2. 회수된 제품 및 포장재	●		●			

1 재생자원 사용량

• 재생자원

재생자원은 재생에너지, 생물 재생자원, 광물 재생자원, 수자원 재생이 있음.

구분	종류
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수력, 파력, 지열 등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전기 등의 인공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 • 바이오에너지: 동물 분뇨, 식물/목재/음식물 폐기물 등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포집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 • 폐열, 폐온수: 제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온수를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것
생물재생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폐기물: 거위/오리의 다운(솜털) 재활용, 자동차 시트/소파 등으로 사용된 동물 가죽을 수거하여 재가공하는 등의 동물자원 폐기물 재활용하는 것 • 식물 폐기물: 펄프(종이) 재활용, 음식폐기물 퇴비화, 폐목재 연료화, 폐목재 활용 MDF합판 제작, 바나나/파인애플 껍질 등을 재활용하여 펄프나 가죽을 생산하는 등의 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
광물재생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질: 폐철, 폐구리 등 금속폐기물을 재가공, 재활용하는 것 • 화학물질: 재생 플라스틱 등 화학가공공정을 거친 물질을 재활용한 것
수자원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취수 한 물을 사용 후 정화 등의 방식을 통해 여러 번 사용하는 것

2. 순환경제/자원순환

2 회수된 제품 및 포장재

• 회수된 제품

판매된 제품 중 폐기가 아닌 재활용, 재사용, 재가공을 위해 회수된 제품

- 가전 및 IT 제품 계열: 수리 후 재판매, 분해 후 부품 재사용, 분해 후 원재료화 등
- 가구 및 목재 제품: 수리 후 재판매, 분해 후 부품 재사용, 분해 후 원재료화 등
- 의류, 침구류 등 봉제 제품: 수선 후 재판매, 재가공 원재료화 등
- 가죽 제품(의류, 소파, 자동차 시트, 가방 등): 수선 후 재판매, 재가공 원재료화 등

• 회수된 포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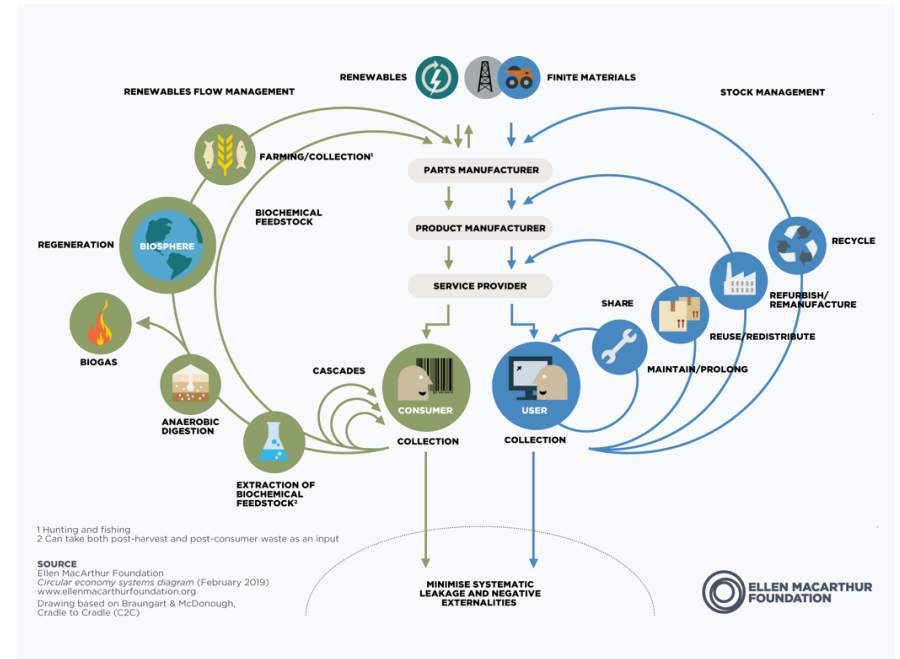
판매된 제품의 포장재를 폐기가 아닌 재활용, 재사용, 재가공을 위해 회수한 것

- 종이 포장재: 포장박스, 충전재, 완충제, 사용설명서 등
- 플라스틱/합성수지 포장재: 음료 PET, 비닐포장지, 플라스틱 박스/완충제 등
- 목재 포장재: 포장박스, 충전재, 완충제 등
- 유리 포장재: 유리병, 유리상자 등

• 정보공개 방식

- 회수된 제품: 회수된 제품의 총량을 연/톤 단위로 환산하여 정보공개. 연간 전체 판매된 제품의 수량과 회수된 제품의 수량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공개하는 것을 권장함
- 회수된 포장재: 회수된 포장재의 총량을 연/톤 단위로 환산하여 정보공개, 연간 전체 사용된 포장재의 양과 회수된 포장재의 수량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공개하는 것을 권장함

< 참고 > 순환경제 모델



※ 출처: <https://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

3. 수자원/천연자원 사용

개요

-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 인간이 식수, 농축산, 제조활동 등에 사용 가능한 민물(강, 호수, 지하수, 빗물 등)은 약1%밖에 되지 않음. 기업은 물 사용량 정보를 공개하고 가능한 사용량을 줄여야 하며 정수 등을 통해 재사용량을 증가시켜야 함
- 천연자원 또한 명백한 생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천연자원 사용량 정보를 공개하고 가능한 사용량을 줄여야 하며 재활용, 재가공 등을 통해 재사용량을 증가시켜야 함. 또한 천연자원 채취 시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채취하고 채취 후 최대한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CDP	SEC
1. 물 사용량(취수, 배출, 소비)	●	●	●		●	
2. 물 재활용 양(중수 사용량)	●	●	●		●	
3. 천연 원재료 사용량	●		●			

1 물 사용량

- 물 취수량
 - 수돗물: 공공 수도시설로부터 얻은 물의 양
 - 지표수: 강, 호수, 저수지 등 지표면에 위치한 물의 취수량
 - 지하수: 펌프 등을 이용하여 지하에 위치한 물을 취수한 양
 - 해수: 바닷물을 취수한 양

• 물 배출

- 폐수, 하수, 오수, 미사용수 배출량

• 물 소비량

- 물 소비량 = 취수량 - 배출량

2 물 재활용량

• 물 재활용 양

- 한 번 이상 사용하거나, 정화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예: 손 씻은 물을 정화해 화장실 변기 물로 재활용). 빌딩/생산 시설의 중수(중水)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수 사용량'을 의미함

3 천연 원재료 사용량

• 천연 원재료 사용량

- 광물질: 석탄, 석유, 가스, 금속 등 자연에서 채취한 광물질 천연자원 사용량, 생산시설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경우도 해당
- 동물성 천연재료: 동물, 동물의 생산물(가죽, 뼈, 우유 등) 사용량
- 식물성 천연재료: 꽃, 나무, 열매, 식물의 생산물(기름, 분쇄물 등) 사용량

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개요

- 생물다양성은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필수 지표이며, 어떤 한 종류의 생물이나 동물이 감소 또는 멸종되는 것은 그 생물이나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기업은 비즈니스 가치사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지역과 전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또는 긍정적)을 스스로 파악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특히,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나, 반대로 자연 생태계가 급격히 망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경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에 민감성을 가지고 모든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CDP
1. 생물다양성 영향	●	●	●		●	●
2.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및 멸종 위기종 관리	●	●	●		●	●
3. 보호, 복원된 서식지	●		●		●	●

1 생물다양성 영향

• 생물다양성 영향

- 사업장 위치: 본사, 생산, 유통, 물류, 판매장의 위치가 기존의 자연환경을 해치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특히 미개발지에 처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와 환경영향평가 및 정보 공개가 필요함
- 이동/운송경로: 원재료나 상품을 이동시키는 이동/운송경로(전선, 통신선, 케이블, 파이프라인 포함)가 주변 미개발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와 정보 공개가 필요함

- 상품/서비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자연환경 및 동물/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대해 관련 법/규제 및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함

2 생물다양성 보호지역/멸종 위기종 관리

• 자연보호구역

- 기업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인지하고 관련된 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연보호구역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함. 기업은 이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 멸종 위기종

- 기업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멸종 위기종이 서식할 경우 이를 인지하고 관련된 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멸종 위기종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함. 기업은 이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 국제 멸종 위기종 정보 참고: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https://iucn.org/>
- 한국 멸종 위기종 정보 참고: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

3 보호, 복원된 서식지

• 개발 활동 후 보호, 복원된 서식지

-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개발한 천연지에 대해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생물다양성 지표 정보를 공개 함. 예를 들어 천연 삼림에 호텔/골프장 등을 설치한 경우 이전에 해당 지역에 서식하던 동식물 종류 및 개체 수와 개발 후 서식 중인 동식물 종류 및 개체 수를 비교하여 이 정보를 공개 함
- 개발 활동 과정과 이후에 천연지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해 활동한 내용과 성과를 공개 함

• 기타 활동

- 기업의 경영활동과 상관없는 지역이나 생물군에 대하여 사회공헌활동 등의 목적으로 생물 보호, 복원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개 함

5. 환경오염 방지/유독물질 관리

개요

- **오염방지:** 기업은 가치사슬의 경영활동 전과정에서 환경(대기, 물, 토양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파악하여 제거 또는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함. 특히 법적으로 배출이 금지되어 물질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유독물질 관리:**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작/제공하는 과정에서 동식물 및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CDP
1.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		●		●	
2. 대기오염 물질 배출	●	●	●		●	
3. 수질오염 물질 배출	●	●	●		●	

1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

-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 CFC(염화불화탄소), Halon(할론), CCl₄(사염화탄소), 1,1,1-TCE(1,1,1-Trichloroethane, 메탈클로로포름), HCFC, HBFC, Methyl Bromide(CH₃Br) 등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에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연간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을 CFC 등가물 미터톤 값으로 환산하여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기업은 오존층 파괴 물질이 대기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법과 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해야 함

2 대기 오염 물질 배출

- 대기 오염 물질은 대표적으로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POP(영구유기중합제), VOC(휘발성유기화합물), HAP(유해대기오염물질), PM(입자물질), 분진 등이며 기업은 국제법, 국제규약, 국내법, 산업표준 등에 따라 이 물질의 배출 여부를 파악하고 배출량 감축 및 제거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며 그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3 수질 오염 물질 배출

- 기업은 배출하는 국제법, 국제규약, 국내법, 산업표준 등에 따라 주요 수질 오염 물질 배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공개해야 함
- 기업이 폐수를 하수종말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여 배출하지 않고 강, 호수, 바다 등으로 직접 배출할 경우 폐수에 대한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T-N(총 질소), T-P(총 인)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6. 폐기물

개요

- 기업은 가치사슬 전과정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증가는 자원낭비,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배출된 폐기물을 가능한 재사용, 재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CDP
1. 폐기물 배출량 및 구성	●	●	●		●	
2. 폐기물 처리 및 전용	●	●	●		●	

1 폐기물 배출량 및 구성

- **총 폐기물 배출량:** 기업이 자신의 관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총량을 집계하여 공개해야 함
- **폐기물 종류:** 건축/음식/생활/목재/금속/산업/유류/유리/화학/분뇨/동식물 부산물/광물 등 폐기물을 구성하는 주요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종류와 양을 공개해야 함. 폐기물의 종류 구분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폐기물 처리 및 전용

- **매립 폐기물:** 폐기물을 토양에 매립하는 경우 매립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집계하여 공개해야 함
- **소각 폐기물:** 폐기물을 불로 소각하는 경우 소각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집계하여 공개해야 함
- **직접 배출 폐기물:** 하수도, 강, 호수, 바다 등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을 집계하여 공개해야 함
- **특수 처리 폐기물:** 유류, 화학, 방사능물질, 의료용품 등 유독성이 있어 특수한 폐기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을 집계하여 공개해야 함
- **에너지 전환 폐기물:**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공장, 제철소 등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전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을 집계하여 공개해야 함
- **재활용 폐기물:** PET 등 플라스틱, 의류, 알루미늄 캔, 금속 캔, 종이, 목재, 유리병 등 재활용이나 원재료 환원이 가능한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을 집계하여 공개해야 함
- **직접 재활용 폐기물:** 기업이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여 자원화할 경우 이에 대한 종류와 재활용량을 집계하여 공개해야 함
- **간접 재활용 폐기물:** 기업이 위탁업체를 통해 기업 외부에서 간접 재활용하여 자원화할 경우 이에 대한 종류와 재활용량을 집계하여 공개해야 함

7. 공급망 환경영향 관리

개요

-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환경 관리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따라서 기업은 공급망 환경영향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과 프로세스에 따라 공급망의 협력업체들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내용과 정보, 성과를 공개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CDP
1. 공급망 환경영향관리 정책 및 프로세스	●	●	●		●	●
2. 환경영향 관리를 받는 공급망 협력업체	●	●	●		●	●

1 공급망 환경영향관리 정책 및 프로세스

- 공급망 환경영향관리 정책:** 자사를 포함하여 공급망 전체의 환경영향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공급망 환경영향관리 프로세스:** 자사를 포함하여 공급망 전체의 환경영향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ISO14001 환경경영인증:** 대부분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은 자사 및 공급망의 환경영향관리 정책과 프로세스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인증 ISO14001이 요구하는 수준의 활동을 실행하고 이 인증을 취득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2 환경영향 관리를 받는 협력업체

- 환경경영인증을 취득, 유지하고 있는 협력업체:** ISO14001 및 해당 협력업체에 필요한 환경경영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수 및 전체 협력업체 중 비율을 파악하여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이 발생한 협력업체 수:** 보고기간 중 중대한 환경오염 및 사고 등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협력업체 수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함
- 협력업체 환경영향 관리내용과 성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 실사, 검사, 감사 또는 협력업체와의 공동 사업, 공공 R&D, 공동 투자 등의 내용과 성과를 공개해야 함

ESG INFORMATION DISCLOSURE

PART 3 사회 영역 정보공개



- 1. 인권
- 2. 노동권
- 3. 안전과 보건
- 4. 채용/교육훈련/복지
- 5. 공정운영 및 거래
- 6.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확산
- 7. 고객, 소비자
- 8. 지역사회

본 핸드북은 주요 ESG 정보공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주제(이슈)를 중심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설명과 정보공개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범위, 용어, 내용,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인권

개요

- 인권 존중과 보호는 기업경영의 기본 원칙임.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자사의 운영을 비롯해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에서 인권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인권실사를 실행해야 하며, 특히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노예노동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함
- 아동노동, 노예/강제노동을 비롯하여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 사건, 관행 등이 발견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그 고충을 예방, 처리, 개선,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관련 피해자를 구제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UNGPs
1. 인권정책	●	●	●	●
2. 인권실사	●		●	●
3. 아동노동	●	●	●	●
4. 노예/강제노동	●	●	●	●
5. 차별금지	●	●	●	●
6. 고충처리 및 구제	●	●	●	●

1 인권정책

- **인권경영 원칙 수립 및 공개**
 - 기업은 인권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며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 UN 인권선언(1948),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201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2011),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2018) 등

• 인권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인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또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정책적 의지 표명
- 기업의 운영, 생산, 서비스와 연관된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인권 존중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명시
-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방지, 완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상세한 주의 절차
- 기업의 다른 운영 정책과 절차에 인권 존중과 보호를 반영하는 내용
- 인권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 절차

2 인권실사

- **인권실사**
 - 인권실사(Due Diligence)는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과정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 및 발생 가능성 유무를 파악하여 이를 제거, 완화, 개선하는 과정을 의미함
- **인권실사의 방법: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 준용**
 - 정책 및 절차 점검: 인권경영 정책과 절차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교육 및 인식제고 확인: 인권경영 정책과 절차를 교육하고 인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
 - 조사활동: 서베이, 인터뷰, 현장방문, 관찰 등을 통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 여부 확인
 - 구제 프로세스 확인: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피해자가 구제받기 위한 절차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절차의 수립 및 작동 여부 확인
 - 개선 확인: 과거에 발생하거나 지속되어 온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해결, 개선되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여부 확인
- **인권실사 여부의 공개**
 - 기업은 인권실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 및 성과를 공개해야 함

1. 인권

3 아동노동

- **아동노동:** 아동의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만 15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함. 법 및 관련 규정과 보호자의 보호 범위안에서 영화/TV 프로그램 출연, 모델 활동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성인과 같은 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일을 돕거나 가사 노동을 하는 것 또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 양육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침해할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할 경우 아동노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제3세계의 아동노동:** OECD 회원국 등 경제 선진국에서는 아동노동이 발견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나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1억 2천만 명 이상의 아동이 성인과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22년 IPO 보고서)
-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조치 공개:** 기업은 인권정책 실행과 협력업체 인권실사 등을 통해 가치사슬의 아동노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아동노동 발견 시 협력업체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함. 기업은 인권실사보고서 등을 통해 아동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성과를 공개해야 함

4 노예/강제노동

- **노예/강제노동:** 노예노동/강제노동은 법과 관련 규정에 명시된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노동 형태를 의미함
 - 저임금 노동: 법적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노동
 - 초과 노동: 법적 근로시간과 휴식/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노동
 - 구속/속박 노동: 일을 그만둘 자유, 이동의 자유, 휴식의 자유, 생리 활동의 자유 등이 보장되지 않는 구속 및 속박된 상황에서의 노동
 - 폭력/폭언/괴롭힘: 고용주나 선임자 등에 의해 폭력, 폭언, 괴롭힘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상황에서의 노동
 - 안전/보건 미확보: 안전이나 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 **노예/강제노동 금지를 위한 조치 공개:** 기업은 인권정책 실행과 인권실사 등을 통해 자사 및 협력업체에서 노예 노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노예/강제노동 발견 시 이를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함. 기업은 이러한 노력의 내용과 성과를 공개해야 함

5 차별금지/다양성/포용성

- **차별금지:** 인권존중과 보호의 첫걸음은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전제로,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어떤 경우도 인권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다양성:** 기업 운영 및 가치사슬 전반에서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원칙과 정책을 실행해야 함
- **포용성:** 소수자, 사회적약자를 포용하는 원칙과 정책을 실행해야 함
- **차별요소:** 성별, 성적취향(예:LGBT),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출신지역, 민족, 학력, 연령, 외모, 신체특성, 장애여부 등이 차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업의 차별금지:** 기업은 채용/급여/승진/기회보장, 협력업체 선정, 상품과 서비스 개발, 마케팅, 판촉/영업, 광고 등에서 인권 차별적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문제 발견 시 제거,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함
-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공개:** 기업은 인권정책 실행과 인권실사 등을 통해 가치사슬 내 인권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며, 차별 요인이나 활동 발견 시 이를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함. 기업은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천하는 노력의 내용과 성과를 공개해야 함

6 고충처리 및 구제

- **고충처리 및 구제:**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이해관계자(특히, 자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주민)가 기업의 활동, 상품과 서비스 등으로 인해 인권 침해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고충(불만, 피해, 억울함 등)을 제기하고 구제받는 것을 의미함
- **고충처리 및 구제 정책과 프로세스:** 기업은 인권과 관련된 고충처리 및 구제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야 함. 이해관계자는 누구든지 익명으로 고충처리 및 구제 프로세스에 접근하여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함. 기업은 제기된 인권침해 문제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함
- **고충처리 및 구제 정책과 프로세스 공개:** 기업은 인권과 관련된 고충처리 및 구제 정책과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과 성과를 공개해야 함

2. 노동권

개요

- 노동권은 인권과 연결되며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기업은 이를 보장해야 함. 기업은 ILO(국제노동기구)의 4대 기본원칙(1. 차별금지, 2. 아동노동금지, 3. 강제노동금지, 4. 단체교섭권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비롯하여 노동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을 준수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UNGPs
1.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	●	●	
2. 단체 교섭권 보장	●	●	●	
3. 단체 교섭에 가입된 노동자	●	●	●	

1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보장:** 노동자는 노동권 및 인권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하여 더 나은 노동 환경과 조건을 위해 둘 이상의 노동자가 모여 집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여 고용주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음.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집회 모집과 실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결사의 자유 보장:** 노동자는 관련 법에 따라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권익 보장을 위한 단체(노동조합 등)를 결성할 수 있으며 기업(고용주)은 노동자들의 단체 결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기업의 노동권 보호 정책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정보 공개:** 기업은 ILO기본원칙과 노동권 보장 관련 법을 준수하는 노동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 내용과 성과를 공개해야 함

2 단체교섭권 보장

• 단체교섭권 보장

- 노동자는 단체(노동조합 등)를 결성하여 고용주에게 노동 환경 및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노동자 단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고용주는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함
- 노동단체의 요구사항과 고용주의 수렴에 차이가 있을 경우 교섭을 통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단체교섭 내용의 정보 공개:** 기업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며, 보고기간 내에 진행된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 및 정보를 공개해야 함

3 단체 교섭에 가입된 노동자

• 단체 교섭에 가입된 노동자

- 노동자 단체(노동조합 등)에 가입된 노동자 인원, 비율 등 공개

• 단체 교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

- 고용주와 노동자 단체의 교섭이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 인원, 비율 등 공개
- 기업에 따라 노동자 단체에 가입된 노동자만 단체교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3. 안전과 보건

개요

- 안전과 보건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특히, 사업장 내의 안전과 보건은 임직원과 고객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책, 목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책임질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
-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대부분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은 자사 및 공급망의 안전 및 보건관리 정책과 프로세스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요구하는 수준의 활동을 실행하고 이 인증을 취득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UNGPs
1. 산업안전보건관리 시스템	●	●	●	
2. 위험 식별, 리스크 진단 및 대응	●	●	●	●
3. 노동자 참여 및 교육/훈련	●	●	●	
4. 노동자 보건 증진제도	●	●	●	
5. 업무관련 부상 및 건강문제	●	●	●	
6. 재해발생 건수/발생률	●	●	●	

1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기업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기본적으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ISO45001과 같은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산업보건안전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아래와 같음
 - 정책: 사업장의 보건과 안전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의지를 명시하고 보건과 안전을 관리하는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
 -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 보건과 안전 실행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 및 의사결정체계, 실무 실행 체계
 - 목표 및 기준: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목표 및 기준(예:사고발생률, 중대재해발생률, 안전점검 횟수, 안전교육 및 훈련 횟수, 사업장 공기질, 사업장 소음 정도, 비상구 확보 등)
 - 실행 프로세스: 목표 및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력, 자원 등을 제시해야 함
 - 성과 평가 및 개선: 목표 및 기준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 평가 후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과제 실행 결과 등을 제시해야 함

2 위험 식별, 리스크 진단

- **위험 식별, 리스크 진단**: 기업은 사업장 및 업무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일상적이거나 비일상적인 리스크를 진단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이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위험 예방/대응 조직: 위험 또는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긴급사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 신고체계: 노동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위험 발생 및 위험 요인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
 - 대피체계: 노동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거나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방법, 시설
 - 사고 발생 시 대비 체계: 사고 발생 후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 체계

3. 안전과 보건

3 노동자 참여 및 교육/훈련

- **노동자 참여:** 사업장을 포함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안전과 보건 관리 의사결정과 실행 체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기업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기업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교육과 훈련:** 기업은 사업장과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보건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함. 화재/자연재해 발생 대비 훈련 등 법적 의무 훈련뿐만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물질 유출, 심정지 등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 체계를 만들고 이를 실행한 후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4 노동자 보건 증진제도

- **노동자 보건 증진 제도:** 기업은 사업장을 포함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행하고 그 성과를 공개해야 함
 - 정기건강검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된 노동자가 추가 검사 및 건강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심리건강지원: 신체, 물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문제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임신부 지원: 임신한 노동자가 있을 시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과 조건을 제시하는 등 임신부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함
 - 장애인 지원: 장애가 있는 노동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편의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제공해야 함

5 업무관련 건강 및 부상 문제

- **업무관련 건강 및 부상:** 기업은 사업장 및 노동현장의 특성,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빈도, 위험도가 높은 건강 문제 및 부상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 실행의 내용과 성과를 공개해야 함
 - 물리적 부상: 건설, 토목, 제조, 물류, 운송, 중장비 운용, 도로 작업, 전기 작업, 화학, 세균, 폐기물, 불, 냉동/냉장 등 물리적 부상의 위험이 큰 업종은 물리적 부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 내용과 성과를 공개해야 함
 - 심리적 스트레스: 고객 대응, 상담, 교육, 복지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업종은 심리적 손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 내용과 성과를 공개해야 함

6 산업재해발생 건수/발생률

- **산업재해발생 건수:** 기업은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재해 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산업재해에 관한 법과 규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 중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 1인당 1일 이상 근로 손실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산업재해로 기록함.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근로자 1인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나, 이 기준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산업재해 발생률:** 산업재해발생률은 근로자 인원 대비 연간 발생률, 근로자 전체의 연간 총 근로시간 대비 근로 손실일 비율, LTIFR(임직원 근로손실 재해율) 등으로 나타내며 기업은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률을 산출하여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임직원 근로손실 재해율(LTIFR: 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s): 100백만 시간 근무할 때마다 발생하는 부상 건수 = 임직원 근로손실 부상 건수 / 임직원 총 근무시간 * 1,000,000

4. 채용/교육훈련/복지

개요

- 기업의 경제, 사회적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임.
노동자 개인은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생산과 기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음
- 사회는 계속 변화, 발전하고 기술 또한 그러하므로 기업이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기술교육과 역량강화를 끊임없이 실행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직장/직업은 개인에게 있어 생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자아실현과 자기만족의 수단이기도 하므로 기업은 건전한 조직문화와 직원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안정적인 급여 지급과 다양한 복지혜택은 임직원의 사기와 업무 효율,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재 확보 및 유지에 필수 조건임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UNGPs
1. 임직원 인원수 및 구성	●	●	●	
2. 채용 및 퇴사	●	●	●	
3. 교육 및 훈련	●	●	●	
4. 성과 평가와 보상	●	●	●	
5. 급여 및 퇴직금	●		●	
6. 복지	●	●	●	

1 임직원 인원수 및 구성

- **임직원 인원수 및 구성:** 기업은 임직원 총원을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총원 정보: 매년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임직원의 총원 정보를 집계하고 공개
 - 고용 계약: 정년(만 65세 등)이 보장된 고용 계약,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기간제(6개월, 1년 등) 고용 계약, 임시(하루, 단기)고용 계약 등 회사의 고용 정책에 따라 고용 계약을 구분한 인원을 집계하고 공개
 - 남/여: 남성과 여성의 인원과 비율을 공개함
 - 고위 직급의 남/여 비율: 관리자(팀장 이상 등)급 이상의 남/여 인원과 비율을 공개함
 - 연령: 연령대별 인원과 비율을 공개함
 - 다양성 정보: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 국적, 인종, 민족, 장애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기업의 임직원 구분과 집계는 국가별로 관련 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국적 기업의 경우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국가별 집계 기준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2 채용 및 퇴사

- **채용 총수:** 보고기간(통상 1년) 동안 채용한 인원 총수
 - 채용 인원은 고용계약별, 남/여, 연령, 신입/경력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음
- **퇴사 총수:** 보고기간(통상 1년) 동안 퇴사한 인원 총수
 - 퇴사 인원은 고용계약 종료,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구조조정 등), 징벌적 퇴사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음

4. 채용/교육훈련/복지

3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기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한 내용과 성과를 공개할 수 있음
- **법정의무교육과 훈련:** 인권(성희롱/성폭력 예방, 직장내 갑질, 장애인 인식개선), 안전, 정보보호 및 보안, 화재대피훈련 등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과 훈련
- **신입직원교육:** 새롭게 입사한 직원이 회사 조직,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 **기술교육, 자격교육:** 기업을 운영하거나 상품 생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격 (자격갱신 포함) 교육 및 훈련
- **승진자 교육:** 상급 직급에 필요한 리더십, 책임, 윤리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은퇴자 교육:** 은퇴 후 재취업 등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4 성과 평가와 보상

- **성과 평가와 보상:** 기업은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 제도의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기업은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성과평가 제도:** 기업은 성별, 출신 지역, 학력, 국적, 종교, 나이와 상관없이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실행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 **보상 제도:** 승진, 급여, 성과금, 교육/연수기회 제공, 부서/근무지 이동 등 성과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5 급여 및 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 관련 법과 고용계약을 준수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급여 총액:** 급여 총액을 공개
 - **퇴직적립금:** 직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 적립 총액을 공개
 - **급여차이:** 남/여 직원 평균급여 차이,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과 임직원 급여의 중간값과의 차이를 공개
 - **성과금 차이:** 가장 많은 성과금을 받는 사람(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과 임직원이 받은 성과금 중간값과의 차이를 공개
- ※ 급여와 성과금 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있는지, 또는 최고 경영자가 일반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6 복지

- **복지:** 직원 및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는 임직원의 사기와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인재확보 및 유지에 도움이 됨. 기업은 직원 및 직원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복지 차별:** 고용계약 형태에 따라 복지제도 이용에 차별이 있는 경우 이 정보를 공개함
- **출산 및 양육 지원:** 국가의 법률상 보장되는 출산휴가/휴직, 육아휴가/휴직 외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균형 측면에서 기업이 스스로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가 있다면 이를 공개함

5. 공정운영 및 거래

개요

- 공정운영 및 거래는 기업 운영과 거래에 있어 부패(뇌물수수, 횡령, 배임, 자기이익 편취, 특수 이해관계자와의 유리한 거래 등)와 부당거래(독점, 내부거래, 담합 등)를 예방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 발생 시 이를 조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절차, 조치 등의 정보와 내용을 공개하는 것임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UNGPs
1. 반부패 정책, 절차	●	●	●	
2. 확인된 부패 사건 및 조치, 윤리경영 위반 건수 및 조치	●	●	●	
3. 반경쟁, 반독점 행위 및 조치	●	●	●	
4. 부패 평가 사업장	●	●	●	
5. 준법, 윤리교육 참여 현황	●	●	●	

1 반부패 정책, 절차

- 반부패 정책, 절차:** 기업은 운영과 거래에 있어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과 신고/감시/처리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실행한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정책: 준법, 윤리, 반부패 경영 원칙/내규/행동강령 등
- 절차: 반부패 정책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절차(공지, 교육 등), 부패 행위를 발견하는 정기/비정기적 감시/감사 절차, 부패행위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발견된 부패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2 확인된 부패 사건 및 조치, 윤리경영 위반 건수 및 조치

- 기업은 보고기간 중 발생한 부패 사건 또는 윤리경영 위반 건수와 이를 조치한 경과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3 반경쟁, 반독점 행위 및 조치

- 기업은 보고기간 중 발생한 반경쟁, 반독점 행위와 이에 대한 조치 경과를 공개해야 함

4 부패 평가 사업장

- 기업은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정기, 비정기 감사활동을 진행한 사업장 수를 공개해야 함

5 준법, 윤리교육 참여 현황

- 기업은 반부패 정책 및 절차를 모든 임직원에게 교육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그 내용과 성과를 공개해야 함

6.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확산

개요

- 기업은 공급망의 협력업체가 지속가능경영의 사회 이슈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류 및 협업을 해야 하며, 특히 협력업체의 운영 규모와 수준이 자사보다 소규모인 경우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UNGPs
1. 사회영향 심사 공급업체	●	●		

1 사회영향 심사 공급업체

- 기업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 또는 이 두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자체 실사 지침과 절차에 따라 사회(인권, 노동권, 안전 및 보건, 공정운영 등) 이슈에 대한 영향 심사를 한 공급업체의 수와 그 비율을 공개해야 함

7. 고객, 소비자

개요

- 기업은 고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함. 또한 법률로 정해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표기를 준수해야 하며, 과장광고, 그린워싱 등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고객과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함
- 기업은 유아/아동,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환자/부상자, 외국인 등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객과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UNGPs
1. 제품, 서비스 안전영향 평가	●	●	●	
2. 제품, 서비스 안전 및 위반	●	●		
3. 상품, 서비스 정보표기	●	●	●	
4. 공정 마케팅 및 위반	●	●		
5. 소비자 정보보호 위반	●	●		
6. 소비자 사회적 포용		●	●	

7. 고객, 소비자

1 제품, 서비스 안전영향 평가

- 기업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 영향 평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중요한 안전영향 평가: 보고기간 중 기업의 중요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안전 영향이 평가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2 제품, 서비스 안전 및 위반

-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안전을 위한 노력과 실행성과를 공개해야 함
- 기업은 보고기간 동안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안전 관련 법과 규정 또는 자체 원칙을 위반한 건수 및 이에 대한 사후 조치의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3 상품, 서비스 정보표기

- 기업은 법과 규정이 정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표기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품과 서비스의 성분 및 이용 과정상의 특성이 이용자 혹은 동식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정보를 표시해야 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품과 서비스의 성분 및 이용 과정상의 특성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정보를 표시해야 함

4 공정 마케팅 및 위반

- 기업은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며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됨
- 기업은 광고 및 마케팅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고기간 동안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자체 원칙을 어긴 경우 이 정보 및 내용과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함

5 소비자 정보 보호 위반

- 기업은 소비자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보고기간 중 관련 법이나 규정, 내부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과 정보,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함

6 소비자 사회적 포용

- 기업은 유아/아동,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환자/부상자, 외국인 등이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과 서비스 등 사회적 포용을 실천해야 함. 그 실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8. 지역사회

개요

- 기업은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지역사회는 기업 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과 지역사회는 상호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 기업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하는 일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하며, 지역의 경제, 환경,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참여와 역할을 해야 함
- 기업은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와 특히 자사 및 자사 사업장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지속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NFD	UNGPs
1.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	●	●
2. 지역사회 권리 보장 및 침해	●	●	●		●
3. 공급사슬 사회 부정적 영향	●	●	●	●	●
4. 지역사회 참여 사업장 및 내용	●				

1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

-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거나 기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업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제거하거나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경제적 영향: 기업은 지역사회에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지역 내에서 상거래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반대로 기업이 지역사회에 사업장을 축소, 폐쇄하는 경우 지역사회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기업은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사회적 영향: 기업은 지역사회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정치, 문화, 교육, 복지, 보건, 안전 등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지역주민 다수를 고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지역사회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안전, 건강 등의 요소가 임직원의 만족도 및 생활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기업은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안전, 건강 등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직,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이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환경적 영향: 기업은 지역사회에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거나 기타 활동을 통해 지역 자연환경과 천연자원 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은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8. 지역사회

2 지역사회 권리 보장 및 침해

- 기업은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법적 및 선주민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야 하며 만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와 협의와 합의, 보상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해야 하며 기업은 이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재산권: 기업은 지역사회에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향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주민과의 협의, 합의, 보상, 법적조치 등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안전 및 보건: 기업은 지역사회에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주민의 안전과 보건을 해치거나 향후 해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해 지자체, 선주민과의 협의, 합의, 보상, 법적 조치 등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자원 사용: 기업은 지역사회에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토지, 물, 동식물 자원(숲 등), 광물자원, 공공인프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주민의 자원 사용권을 해치거나 불편을 줄 수 있음. 부족하거나 제한된 자원의 경우 해당 자원과 관련된 선주민의 생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기업은 이러한 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응책에 대해 지자체, 선주민과의 협의, 합의, 보상, 법적 조치 등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 기타 권리: 기업은 지역사회에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규정되거나 규정 되지 않은 선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예방, 대응책에 대해 지자체, 선주민과의 협의, 합의, 보상, 법적 조치 등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3 공급사슬의 사회 부정적 영향

- 기업은 자사의 사업장과 경영활동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의 협력업체를 통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실사 등을 통해 이 점을 파악해야 하며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원재료 채취: 공급망의 협력사를 통해 원재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자연환경 파괴, 천연자원 고갈, 인권/노동권 침해, 아동/노예노동 발생, 지역 선주민의 권리침해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 가공 및 운송: 공급망의 협력사가 자사에 납품하기 위해 가공 및 운송(파이프라인 포함)하는 과정에서 사회,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4 지역사회 참여 사업장 및 내용

- 기업은 앞선 1, 2, 3번 공개 지표에 따라 파악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권리침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제거하거나 줄이고 긍정적 영향은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고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경제적 영향: 지역사회에 위치한 사업장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직, 간접적으로 늘리고 지역 내 업체와 거래를 늘림으로써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경제 관련 공공 인프라 구축 투자, 지역 축제 등의 이벤트 지원 등을 통해서도 지역사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련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사회적 영향: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안전,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이 직접 학교, 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복지시설, 공원, 병원 등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간접적인 지원과 후원, 협력,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업은 관련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ESG INFORMATION DISCLOSURE

PART 4 거버넌스 영역 정보공개



- 1. 소유구조
- 2. 이사회
- 3. 비전/전략/목표
- 4. 중대성 주제
- 5. 정책 및 내재화
- 6. 준법 및 윤리경영
- 7.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 관리
- 8. 이해관계 참여

본 핸드북은 주요 ESG 정보공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주제(이슈)를 중심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설명과 정보공개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범위, 용어, 내용,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소유구조

개요

- 지속가능경영 의사결정 및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소유구조 및 종속기업 현황을 공개해야 함. 소유구조 및 종속기업 현황은 기업의 연례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서술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UNGPs
1. 소유구조	●		●			
2. 종속기업 현황	●		●			

1 소유구조

- 소유구조:** 기업의 소유구조를 연례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 함

2 종속기업 현황

-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의 현황을 연례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 함

2. 이사회

개요

-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지속가능경영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야 함. 이사회는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대의적/대외적 명분과 기업 자체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실체적/내부적 실리의 균형을 잘 맞추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함
-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유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함
- 이사회는 지속가능경영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그 의사결정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 이사회 구성원의 성과평가와 보수는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와 연계되도록 하여 이사회에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UNGPs
1. 이사회 구조	●		●			
2. 이사회 구성 및 임명	●	●				
3. 이사회 의장	●		●			
4. 이사회 지속가능경영 관리&책임	●	●	●	●	●	●
5. 이사회 이해상충관리	●					
6. 이사회 전문지식	●					
7. 이사회 성과평가 및 보수	●					

2. 이사회

1 이사회 구조

- 기업은 이사회가 지속가능경영에 관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이사회 구조도: 이사회 및 이사회 위원회의 구조도 제시
 -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 기구: 이사회 구조 중 지속가능경영의 이슈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 기구 및 이 기구들의 역할과 책임 공개(예: 지속가능경영(ESG)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2 이사회 구성 및 임명

- **이사회 구성:**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이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사항을 책임 있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이사회 명단 및 각 이사의 약력
 -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 사외이사의 독립성: 대주주, 최고 경영자와의 특수 관계 여부 등
 - 이사 재임기간
 - 이사 직책, 의무, 책임
 - 이사 성별, 국적, 인종적 특성
 - 이사의 대표성: 이사가 특정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 **이사회 임명:**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식과 체계,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함

3 이사회 의장

- 기업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최고 경영자(또는 사내이사)인지를 공개해야 하며, 이사회 의장이 최고 경영자이거나 사내이사인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4 이사회 지속가능경영 관리 및 책임

- 기업은 이사회가 가치사슬 전반의 환경과 사회적 영향(긍정적, 부정적, 실제적, 잠재적)에 대해 어떤 관리 및 책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정책, 원칙, 전략, 목표의 결정: 환경, 사회와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원칙, 전략과 목표를 결정하는데 이사회 책임과 역할
 - 최고 경영진과 경영진의 관리 감독: 최고 경영진과 경영진이 환경, 사회와 관련된 기업의 실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사회 관여 및 책임과 역할
 - 중대성 주제 결정: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목표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중대성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관여 및 책임과 역할
 - 지속가능성 실사: 인권, 환경, 공급망 실사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와 관련된 이사회 관여 및 역할과 책임

5 이사회 이해상충 방지

-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이 기업 전체의 이익과 유익이 아닌 이사 개인이나 특수관계자의 이익/유익을 위하거나, 특정 대상에 대한 손해/보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과 체계를 공개해야 함

2. 이사회

6 이사회 전문지식

- 기업은 이사회가 지속가능경영에 관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전문지식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전문지식 보유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지속가능경영 관련 전문 지식/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공개
- 전문지식 향상 조치: 이사회 구성원이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전문 지식/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이 하는 조치(교육/연수, 세미나 참석 등)를 공개

7 이사회 성과평가 및 보수

- **이사회 성과평가:**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의 성과평가 중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평가지표가 있는지 공개해야 함.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성과지표가 이사회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되면 이사회는 보다 책임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수 있음
- 온실가스 감축: EU의 주요 기업은 EU 그린 딜 정책에 따라 이사회 성과평가에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포함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실사: 지속가능경영 영역에서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인권영향평가 등 지속가능성 실사와 그에 따른 개선과제 실천을 이사회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하고 있음
- **이사회 보수:**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의 보수결정 절차와 보수액(성과급 포함)을 공개해야 하며 이사의 보수가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와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3. 비전/전략/목표

개요

-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대외적/대내적 비전(목적과 방향), 전략(비전의 실행 방법), 목표(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대외적(대외적) 비전은 인류 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며 대내적(실리적) 비전은 기업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 확보임
- 기업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나 최고 경영자의 명의로 된 지속가능경영 비전을 공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 체계를 공개해야 함
- 기업(특히 UNGC 회원사)은 UN SDGs(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비전, 전략, 목표의 연계성을 제시하고 그 실행 성과를 공개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UNGPs
1. 지속가능성 성명 또는 지속가능경영 실행 성명	●		●	●	●	●
2. 지속가능발전 전략	●	●	●	●	●	

1 지속가능성 성명 또는 지속가능경영 실행 성명

-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가치 또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기구 의장이나 최고 경영자가 서명한 성명서를 공개해야 함
- 기업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장 또는 최고 경영자가 지속가능경영의 중요 영역이자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 순환비즈니스, 인권경영, 공급망 지속가능성 확산, 안전과 보건 등에 관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가치사슬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공개해야 함

3. 비전/전략/목표

2 지속가능발전 전략

- 기업은 UN SDGs가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영역 169개 지표 달성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장 또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담은 성명과 이와 관련하여 경영 및 기타 활동에서 어떤 실행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대성 주제 목록과 UN SDG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4. 중대성 주제

개요

- 기업은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에서 기업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그 영향이 기업의 재무 상황에 미치는 중대한 위기와 기회를 분석하여 이를 지속가능경영의 전략, 목표, 실행과제에 반영할 수 있음
- 기업은 중대성 주제 목록을 공개하고 그 주제들의 영향,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UNGPs
1. 중대성 주제 결정 절차	●	●	●			●
2. 중대성 주제 목록	●	●	●			
3. 중대성 주제 관리		●	●			

1 중대성 주제 결정 절차

- 기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 중대성 주제를 결정했는지 공개해야 함
- 영향 식별 방식: 기업의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 전반에 걸쳐 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실질적, 잠재적,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식별한 방식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 방식
- 기회 및 위기 식별 방식: 중대한 영향으로 식별된 이슈 및 문제가 기업의 재무제표(매출, 수익, 비용, 자산 등)에 어떤 기회와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한 방식과 결과
- 이해관계자, 전문가: 영향과 기회 및 위기를 식별하는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방식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목록

4. 중대성 주제

2 중대성 주제 목록

- 기업은 영향과 기회 및 위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대성 주제 목록을 공개해야 함
 - 중대성 주제 목록
 - 이전 보고 기간과 달라진 중대성 주제 목록 내용 및 달라진 이유 설명

3 중대성 주제 관리

- 기업은 중대성 주제를 관리하는 방식, 내용, 성과를 공개해야 함
 - 중대성 주제가 경제, 환경, 사람(특히, 인권)에게 미치는 실질적/잠재적/부정적/긍정적 영향 서술
 - 중대성 주제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설명 및 이와 관련된 활동 또는 비즈니스 관계 서술
 - 중대성 주제에 관한 조직의 정책 또는 약속 서술
 - 중대성 주제에 관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해결하기 위한 조치 및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조치
 - 조치의 효과를 추적/평가하는 목표 및 성과지표, 프로세스, 성과 자체 및 이를 조직 운영과 정책에 통합하는 방법
 - 중대성 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방법,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5. 정책 및 내재화

개요

-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고 이를 경영활동 및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 통합 및 내재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정책을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 통합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UNGPs
1. 정책 서약	●		●			●
2. 정책 내재화	●		●			●

1 정책 서약

- 기업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이나 최고 경영자가 서명한 아래의 예와 같은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 서약을 공개해야 함. 정책서약은 UN, OECD와 같은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관련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는 것을 권장함
 - 인권경영: 인권 보호, 존중, 구제를 위한 인권경영 정책 서약
 - 환경경영: 온실가스 감축, 오염방지, 자원순환, 생태계 보호/보존 등 환경경영 정책 서약
 - 공급망 상생경영: 지속가능성 실사, 지속가능경영 확산 등 공급망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위한 정책 서약
 - 안전경영: 임직원, 고객 등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정책 서약
- 기업은 정책 서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시하고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정책 서약이 공개, 소통되는 방식을 설명해야 함

5. 정책 및 내재화

2 정책 서약 내재화

-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서약이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 어떻게 통합되고 내재화되는지에 대해 그 방식, 내용, 성과를 공개해야 함
 - **실행 체계:** 정책 실행 조직 및 체계
 - **공개:** 정책이 공개된 위치(예: 인터넷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 **교육 및 훈련 체계:** 정책 실행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체계
 - **프로젝트:** 정책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
 - **연구 및 개발:** 정책 실행을 위한 연구 및 개발 활동
 - **협력업체 확산:** 정책을 협력업체에 확산하기 위한 기준 제시, 계약서, 이행 확인 등
 - **실사 및 감사:** 정책 실행을 위한 실사 및 감사 프로세스
 - **성과 평가:** 정책 실행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식

6. 준법 및 윤리경영

개요

- 기업은 사회 안정과 안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합의인 법률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 법이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위치한 국가, 지역사회와 사회적 규범과 표준(공동선, 상식, 전통, 문화, 종교적 특성, 예의범절 등)을 존중하고 이를 해치지 않는 경영을 해야 함
- 특정 종교나 지역문화에 따라 인권(아동, 여성, 계급, 인종, 종교, 민족 등) 차별 등 약속이 사회 관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 약속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윤리경영이라고 하지는 않음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UNGPs
1. 준법, 윤리경영 체계	●					
2. 법률 및 규제 준수	●					

1 준법, 윤리경영 체계

-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서 법을 지키고 사회윤리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그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준법, 윤리경영 정책(원칙, 내규, 행동강령 등), 총괄/감독 조직, 교육 및 감사체계
 - 준법, 윤리경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2 법률 및 규제 준수

- 기업은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처벌(징역, 벌금, 과징금, 허가 취소, 업무 중지 등) 및 손해배상 등의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형사처벌, 행정처분:** 경영활동에서 법과 규제를 위반하여 발생한 형사처벌, 행정처분
 - **민사소송:**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7.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 관리

개요

-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지속가능성 실사를 내재화하여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서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며, 특히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개선, 예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해야 함
- 부정적 영향은 기업 경영활동의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재적인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도 파악하여 이를 관리해야 함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리 체계는 기업이 현재 운영 중인 위험관리 체계와 통합해야 하며, 모든 업무 부서와 실무 현장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UNGPs
1.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 관리 체계	●	●	●	●	●	●
2. 자문 요청, 우려 사안 제기 체계	●		●			●

1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 관리 체계

- 기업이 현재 운영 중인 리스크 관리 체계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통합해야 하며 기업은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정책: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제거, 개선, 책임을 지기 위해 약속된 정책
 - 식별: 실사, 감사, 고충 신고 등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 개선: 식별된 부정적 영향을 제거, 완화, 해결, 예방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 참여: 부정적 영향을 식별,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거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절차 및 방법
 - 관리 체계: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는 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개선하는 관리 체계

2 자문 요청, 우려 사안 제기 체계

-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관리함에 있어 내외부의 자문을 요청하고, 우려 사안을 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함
 - 내부 자문: 기업 임직원, 공급사슬의 협력업체 등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식별, 개선하는 데 있어 도움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업 내부 자문 요청 절차 및 방법
 - 외부 자문: 기업 내부 자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 특수한 자문을 요청하는 절차 및 방법
 - 우려사항 제기: 인권/노동권과 관련된 고충신고처리 시스템을 포함하여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 등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또는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8. 이해관계자 참여

개요

-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영활동 전반의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이해관계자 각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차원의 참여가 아닌,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이익 중심의 이기적인 지속가능경영이 아닌, 사회와 환경을 지속가능성도 동시에 향상시키는 대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참여와 방식이어야 함

주요 공개 지표

공개 지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요구					
	GRI	ISSB	ESRS	TCFD	TNFD	UNGPs
1. 이해관계자 식별	●		●			●
2.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					●

1 이해관계자 식별

-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 또는 지역사회, 환경 등을 의미 하며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식별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기업은 이해관계자 식별과 관련된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핵심/직접 이해관계자: 고객, 투자자, 임직원, 협력업체 등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이해관계자
- 간접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언론, 시민단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기업 운영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
- ※ 이해관계자의 구분은 기업의 거래 형태나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정부, 지자체가 주요 고객인 경우, 정부, 지자체는 간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핵심/직접 이해관계자로 구분할 수 있음

2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 기업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참여하는 절차와 방식을 운영하고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함. 특히 지속가능성 주요 이슈 또는 중대성 주제 등과 관련되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절차와 방식이 중요함
- 고객: 고객이 요구, 불만 사항 등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 및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방법과 절차
- 투자자: 투자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의 요구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방법과 절차
- 임직원: 임직원 개인 및 단체(노동조합 등)의 요구, 불만, 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방법과 절차
- 협력업체: 공급망 협력업체의 요구, 불만, 의견 등을 청취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협력업체에 확산 또는 협력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요구, 불만, 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방법과 절차
- 정부/지자체: 정부/지자체의 정책, 요구, 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방법과 절차
- 시민단체: 인권, 노동,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시민단체의 요구, 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방법과 절차
- 언론: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의 보도, 요구, 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방법과 절차

ESG INFORMATION DISCLOSURE

PAR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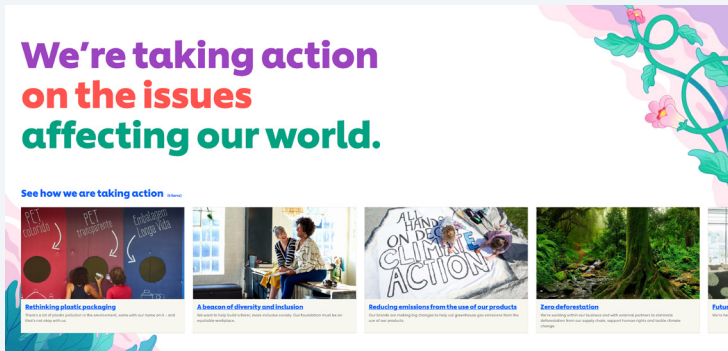
글로벌 기업의 ESG 정보공개 사례

- 1. 유니레버(Unilever)
- 2. 코카콜라(Coca-cola)
- 3. 힐튼(Hilton)
- 4. 애플(Apple)

1. 유니레버(Unilever): ESG 정보공개 현황과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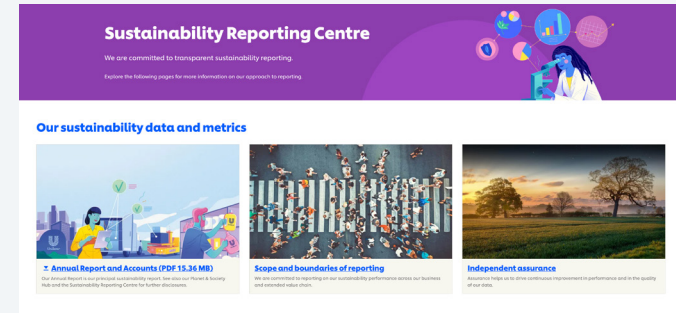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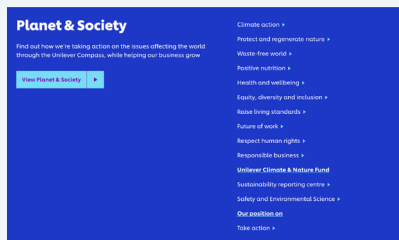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unilever.com

- 유니레버는 기업의 메인 홈페이지 전체를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루는데 사용하고 있음. 2010년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통합한 전략체계 USLP (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 수립/공표 이후 기업을 대표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를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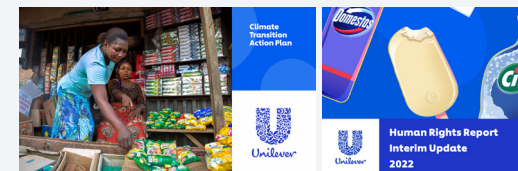
중대성 주제

- 유니레버는 홈페이지 메인 메뉴 중 Planet & Society를 지속가능성 중대이슈로 구성하고, 중대성 주제에 관련한 정책, 전략, 목표, 프로젝트, 성과, 지표 등을 공개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리포팅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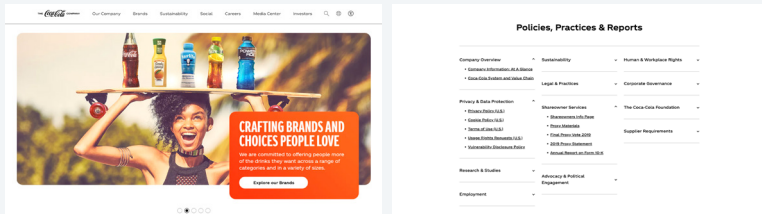
- 유니레버는 홈페이지 내에 지속가능성 리포팅 센터를 구성하고 중대성 주제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ESG 정보를 개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있음. 지속가능경영의 전체적인 내용(개요)은 연례 사업보고서에 통합하여 공개하고 있음
- 유니레버와 같이 현재 지속가능경영에서 앞서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중대성 주제별로 구분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정보공개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 유니레버의 지속가능성 중대성 이슈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 중 기후변화보고서(Climate Transition Action Plan), 인권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및 TCFD 보고, 지속가능성 실사와 인권영향평가 실행, 정보공개를 고민하는 실무자들에게 매우 좋은 교과서로 추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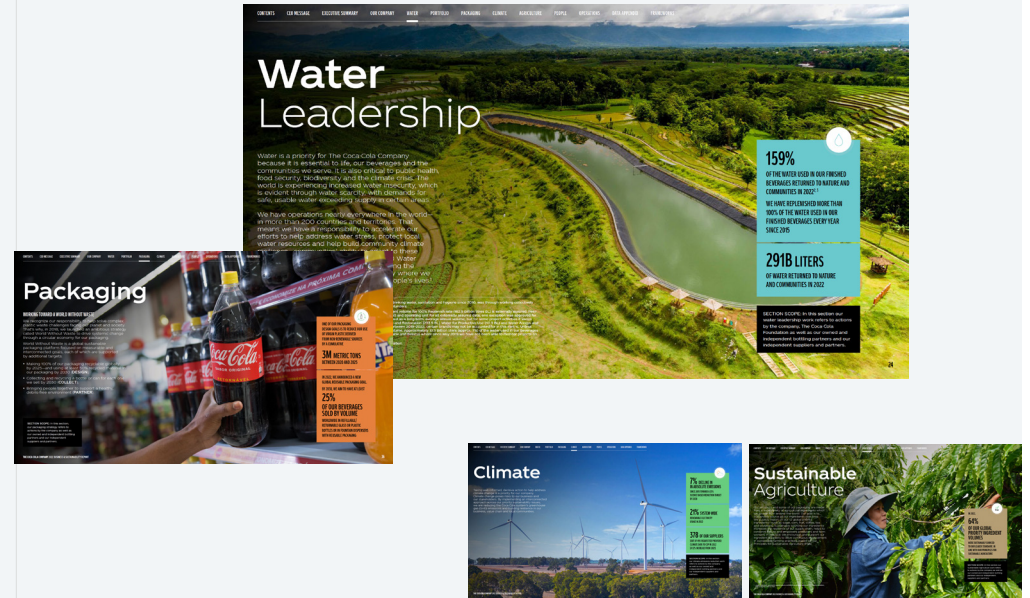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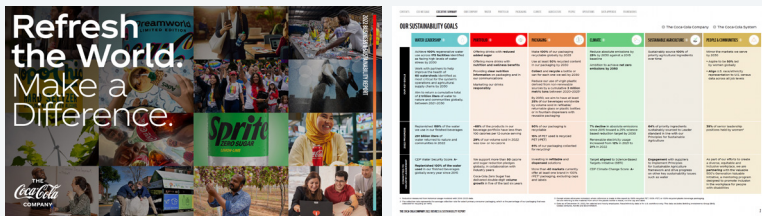
2. 코카콜라(Coca-cola): 중대성 주제 중심 정보공개

홈페이지: www.coca-colacompany.com

- 코카콜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정책, 실행&보고서 페이지를 구성하고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중대성 주제 및 ESG 관련 정보를 각각의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있음



- 코카콜라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중대성 주제를 기반으로 짜여진 코카콜라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전부 담은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의 지속가능경영 전략목표, 즉 중대성 주제에 관한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하였음
- 2019년 미국소비자협회는 코카콜라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소비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라고 선정한 바 있음



지속가능경영 전략목표(중대성 주제) 중심 정보공개

-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의 비즈니스와 지속가능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① 물, ② 포장, ③ 기후, ④ 지속가능한 농업 등 4대 주제를 지속가능경영 전략목표 및 중대성 주제로 정하고 각 주제에 관해 영향, 기회&위기 분석을 실시하여 각 주제들이 코카콜라 및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음
- 코카콜라는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의 각 중대성 주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책임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 주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 전략목표, 프로그램, 프로젝트, R&D, 성과평가 등에 관한 정보와 내용도 공개하고 있음

3. 힐튼(Hilton): ESG 데이터 공개의 정석

홈페이지: <https://esg.hilton.com>

- 힐튼은 2022년 ESG 정보공개를 위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esg.hilton.com을 오픈하였으며 2019년 '목적과 함께하는 여행(Travel with Purpose)'이라는 지속가능경영 브랜드를 런칭하여 운영하고 있음



ENVIRONMENTAL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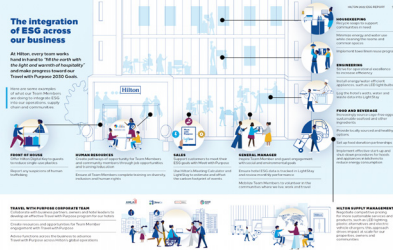
We seek to operate and grow sustainably, reducing our consumption of natural resources. Through climate action and destination stewardship, we intend to pave the way to a net-zero future for our company and the global travel and tourism industry. Learn more about our efforts to reduce Waste, Water and Waste at our hotels.

LEARN MORE

SOCIAL IMPACT

Our enduring role is to foster opportunity for people, both within Hilton for our Team Members and for those in our communities all around the world. We focus on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and social & inclusion and social & inclusion and social & inclusion. Learn more about our efforts to reduce Waste, Water and Waste at our hot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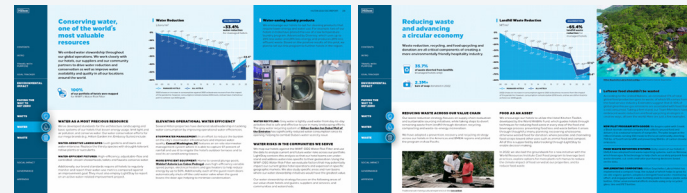
LEARN MORE



- 힐튼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호텔업의 특성을 살려 호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경영 활동과 힐튼의 지속가능경영이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이해관계자들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음

2008년~2022년 환경정보공개

- 힐튼은 호텔업이 환경에 끼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인 ① 탄소배출(냉난방 연료 및 에너지 사용), ② 물 사용, ③ 쓰레기 배출 등 3대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 데이터 관리 시스템 Light Stay를 2008년 도입하고 이후 현재까지 매년 검증된 측정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
- 3대 중요 영역의 환경 데이터를 공개하는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함으로써 데이터 자체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4. 애플(Apple): 공급망 관리 정보공개 모범 답안

홈페이지: www.apple.com/kr/supplier-responsibility

- 애플은 2010년부터 일어난 중국의 1차 협력업체 내 인권,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협력업체 관리시스템을 지난 10년간 구축했으며, 그 과정과 성과를 매년 공급망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한국어 버전도 공개 중임)



- 애플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정책, 협력업체 행동수칙 및 협력업체 책임 기준, 규제 물질 명세서, 협력업체 목록, 협력업체와 일하는 방식, 분쟁광물 보고서, 제련소 및 정제소 목록, 인신매매 및 노예 노동 근절 노력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애플은 공급망 협력업체 관리에 있어 노동권 및 인권, 보건 안전 및 교육, 환경, 협력업체 성과 등 주요 이슈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그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더 쉽게 하고 있음

리소스

Apple 기준	Apple 협력업체	보고서 및 기록
인건비 \$100만 \$100만	인건비 지급 \$100만 \$100만	인건비 지급 \$100만 \$100만
환경 관련 4개 항목 중 3개 이상 합격률 100%	Apple의 협력업체 100%가 합격률 100%	환경 관련 4개 항목 중 \$100만 \$100만
수익 관련 4개 항목 \$100만		2021년 11월 15일 기준 \$100만 \$100만

2021: 숫자로 보는 성과

Apple 2021년 실적(2020년 9월 27일 - 2021년 9월 25일) 기준, 별도 동시 실적 일부 제외

노출량 및 시간	2021년 실적	2020년 실적	비교, 달성 및 교육	2년 연속	2021년 실적
노출량	\$5,000만	\$3,320만	170+	500만+	19만 5,000+
시간	150만	60+	1,177	52	
합계	#1	2,000+	36만 2,589	10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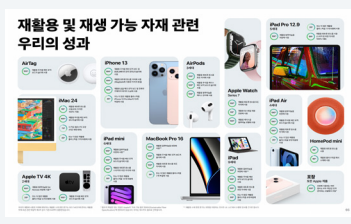
애플 공급망 협력업체 관리 전략: 행동수칙 제시 → 준수 평가와 개선 → 정보 공개



02 근로자들의 의견 경청 및 수렴

애플은 공급망 협력업체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공급망 관리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애플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애플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의 회원사이며 RBA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자사의 협력업체 행동수칙을 수립하고 협력사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애플은 행동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외부 전문 평가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개선 과제 발견 시 일정 기간 동안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애플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행동수칙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자체진단, 보고서, 현장방문, 임직원 서베이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행동수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 애플은 공급망 관리 전략의 실행원칙과 프로세스, 협력업체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애플은 환경경영과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됨에 따라 공급망 보고서에 각 제품의 환경영향 및 재생재료 사용 내용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음
- 애플은 2030년까지 공급망 전체의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SG INFORMATION DISCLOSURE

Appendix



- 1.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 인덱스 비교표
- 2. GRI 2021 인덱스
- 3. ESRS 인덱스
- 4. TNFD 인덱스
- 5. 참고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1.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 인덱스 비교표

환경 영역

이슈	인덱스	GRI	ISSB	ESRS	TCFD	TNFD	SASB	CDP	UNGP's	SEC
기후위기 / 온실가스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체계	●	●	●	●		●	●		●
	기후위기 대응 위험 및 기회 분석	●	●	●	●		●	●		●
	기후위기 대응 목표와 전략	●	●	●	●		●	●		●
	기후위기 대응 실행 방법 및 성과	●	●	●	●		●	●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	●	●	●		●	●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	●	●	●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	●	●		●	●		●
	에너지 사용량	●	●	●	●		●	●		●
순환경제/자원순환	에너지 사용 감축량	●	●	●	●		●	●		●
	재생자원 사용량	●	●	●			●	●		
수자원/천연자원 사용	회수된 제품 및 포장재	●		●						
	물 사용량(취수, 배출, 소비)	●	●	●		●	●	●		
	물 재활용량(중수 사용량)	●	●	●			●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천연 원재료 사용량	●								
	생물다양성 영향	●	●	●		●	●	●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및 멸종 위기종 관리	●	●	●		●	●			
환경오염방지	보호, 복원된 서식지	●		●		●		●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		●		●				
	유독물질 관리	●	●	●		●	●			
폐기물	수질오염 물질 배출	●	●	●		●	●			
	폐기를 배출량 및 구성	●	●	●		●	●			
공급망 환경영향 관리	폐기를 처리 및 전용	●	●	●		●	●			
	공급망 환경영향관리 정책 및 프로세스	●	●	●		●	●	●		
	환경영향 관리를 받는 공급망 협력업체	●	●	●		●	●	●		

※ 본 비교표는 각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인덱스에 포함된 키워드 중 공통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본 비교표에 누락된 인덱스와 키워드가 있을 수 있음

1.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 인덱스 비교표

사회 영역

이슈	인덱스	GRI	ISSB	ESRS	TCFD	TNFD	SASB	CDP	UNGPs	SEC
인권	인권정책	●	●	●			●		●	
	인권실사	●		●					●	
	이동노동	●	●	●			●		●	
	노예/강제노동	●	●	●			●		●	
	차별금지/다양성/포용성	●	●	●			●		●	
	고충처리 및 구제	●	●	●			●		●	
노동권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	●	●			●			
	단체 교섭권 보장	●	●	●			●			
안전과 보건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	●	●			●			
	위험 식별, 리스크 진단 및 대응	●	●	●			●		●	
	노동자 참여 및 교육/훈련	●	●	●			●			
	노동자 보건 증진제도	●	●	●			●			
	업무관련 부상 및 건강문제	●	●	●			●			
	재해발생 건수/발생률	●	●	●			●			
채용/교육훈련/복지	임직원 인원수 및 구성	●	●	●			●			
	채용 및 퇴사	●	●	●			●			
	교육 및 훈련	●	●	●			●			
	성과평가와 보상	●	●	●			●			
	급여 및 퇴직금	●		●						
	복지/복리후생	●	●	●			●			
공정운영 및 거래	반부패 정책, 절차	●	●	●			●			
	확인된 부패 사건 및 조치, 윤리경영 위반 건수 및 조치	●	●	●			●			
	반경쟁, 반독점 행위 및 조치	●	●	●			●			
	부패 평가 사업장	●	●	●			●			
	준법, 윤리교육 참여 현황	●	●	●			●			

1.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 인덱스 비교표

사회 영역

이슈	인덱스	GRI	ISSB	ESRS	TCFD	TNFD	SASB	CDP	UNGPs	SEC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회영향 심사 공급업체	●	●				●			
고객, 소비자	제품, 서비스 안전영향 평가	●	●	●			●			
	제품, 서비스 안전 및 위반	●	●				●			
	상품, 서비스 정보표기	●	●	●			●			
	공정 마케팅 및 위반	●	●				●			
	소비자 정보보호와 위반	●	●	●			●			
	소비자 사회적 포용		●	●			●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		●	●		●	
	지역사회 권리 보장 및 침해	●	●	●			●		●	
	공급사슬 사회 부정적 영향	●	●	●		●	●		●	
	지역사회 참여 사업장 및 내용	●								

1.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 인덱스 비교표

거버넌스

이슈	인덱스	GRI	ISSB	ESRS	TCFD	TNFD	SASB	CDP	UNGPs	SEC
소유구조	소유구조	●		●						
	종속기업 현황	●		●						
이사회	이사회 구조	●		●						
	이사회 구성 및 임명	●	●				●			
	이사회 의장	●		●						
	이사회 지속가능경영 관리&책임	●	●	●	●	●	●			
	이사회 이해상충관리	●								
	이사회 전문지식	●								
	이사회 성과평가 및 보수	●								
비전, 전략, 목표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성명	●		●	●	●			●	
	지속가능발전 전략	●	●	●	●	●	●			
중대성 주제	중대성 주제 결정 절차	●	●	●			●		●	
	중대성 주제 목록	●	●	●			●			
	중대성 주제 관리	●	●	●			●			
정책 및 내재화	정책 서약	●		●					●	
	정책 내재화	●		●					●	
준법 및 윤리경영	준법, 윤리경영 체계	●								
	법률 및 규제 준수	●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 관리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 관리 체계	●	●	●	●	●	●		●	
	자문/도움 요청, 우려 사안 제기 체계	●							●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식별	●							●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							●	

2. GRI 2021 인덱스

GRI 2021 INDEX

공동 표준 Universal Standards			
GRI 1	GRI를 사용하기 위한 기준 및 요구사항	1-1	GRI 목적 및 시스템
		1-2	핵심 컨셉
		1-3	GRI에 따른 보고
		1-4	보고 원칙
		1-5	보고를 위한 추가 권장사항
GRI 2	보고 조직(기업)에 대한 정보	2-1	조직 세부사항
		2-2	보고서에 포함된 조직
		2-3	보고 기간, 빈도 및 책임자
		2-4	정보 재진술
		2-5	외부 검증
		2-6	활동 및 가치사슬 및 기타 비즈니스 관계
		2-7	임직원 현황
		2-8	직원이 아닌 노동자
		2-9	의사결정 구조 및 구성
		2-10	최고 의사결정기구 임명 및 선정
		2-11	최고 의사결정기구 의장
		2-12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지속가능경영 관리 감독 역할과 책임
		2-13	영향 관리 책임 위임
		2-14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있어서의 역할
		2-15	이해상충
		2-16	중요사안 소통
		2-17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공동지식
		2-18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2-19	보수 정책
		2-20	보수 결정 절차
GRI 3	조직(기업)의 중요 주제에 대한 공개지침	3-1	중요 주제 결정 절차
		3-2	중요 주제 목록
		3-3	중요 주제 관리

산업영역 표준 Sector Standards			
GRI 11	오일 & 가스	11-1	온실가스 배출량
		11-2	기후 적응, 회복력, 전환
		11-3	대기 배출량
		11-4	생물다양성
		11-5	폐기물
		11-6	물과 폐수
		11-7	폐쇄 및 재활
		11-8	자산 무결성 및 중요 사고 관리
		11-9	산업보건안전
		11-10	고용관행
		11-11	차별금지 및 기회균등
		11-12	강제노동과 현대 노예제
		11-1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1-14	경제적 영향
		11-15	지역 공동체
		11-16	토지 및 자원권
		11-17	원주민의 권리
		11-18	총돌 및 보안
		11-19	반경쟁적 행동
		11-20	반부패
		11-21	정부에 대한 지불
		11-22	공공정책

2. GRI 2021 인덱스

GRI 2021 INDEX

산업영역 표준 Sector Standards			
GRI 12	석탄	12-1	온실가스 배출량
		12-2	기후 적응, 회복력, 전환
		12-3	폐쇄 및 재활
		12-4	대기 배출량
		12-5	생물다양성
		12-6	폐기물
		12-7	물과 폐수
		12-8	경제적 영향
		12-9	지역 공동체
		12-10	토지 및 자원권
		12-11	원주민 권리
		12-12	충돌 및 보안
		12-13	자산 무결성 및 중요 사고 관리
		12-14	산업 보건 및 안전
		12-15	고용 관행
		12-16	아동노동
		12-17	강제노동과 현대 노예제
		12-18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2-19	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12-20	반부패
		12-21	정부에 대한 지불
		12-22	공공정책

산업영역 표준 Sector Standards			
GRI 13	양식업 어업	13-1	배출량
		13-2	기후 적응, 회복력, 전환
		13-3	생물다양성
		13-4	자연 생태계 전환
		13-5	토양 건강
		13-6	살충제 사용
		13-7	물과 방류수
		13-8	폐기물
		13-9	식량 안보
		13-10	식품 안전
		13-11	동물 건강과 복지
		13-12	지역 공동체
		13-13	토지 및 자원권
		13-14	원주민 권리
		13-15	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13-16	강요 또는 강제노동
		13-17	아동노동
		13-18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3-19	산업보건안전
		13-20	고용 관행
		13-21	생활소득 및 생활임금
		13-22	경제적 포용
		13-23	공급망 추적 가능성
		13-24	공공정책
		13-25	반경쟁 행동
		13-26	반부패

2. GRI 2021 인덱스

GRI 2021 INDEX

주제 표준 Topic Standards	
201-1	생성 및 분배된 직접 경제 가치
201-2	기후변화로 인한 재정적 영향, 리스크, 기회
201-3	확정급여연금제도 의무 및 기타 은퇴지원 제도
201-4	정부의 재정적 지원
202-1	지역 최소 임금 대비 성별 표준임금 비율
202-2	지역 공동체에서 고용한 고위 관리자 비율
203-1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203-2	중요 간접 경제 영향
204-1	지역 공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예산 비율
205-1	부패 관련 리스크 평가를 받은 사업장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소통 및 훈련
205-3	확인된 부패 건 및 관련 조치
206-1	반경쟁 행동, 반독점 및 독점 관행에 대한 법률적 조치
207-1	세금에 대한 접근법
207-2	세금 관리, 통제, 리스크 관리
207-3	이해관계자 참여 및 세금 문제 관리
207-4	국가별 보고
301-1	사용된 원재료의 중량 혹은 부피
301-2	재생재료 사용량
301-3	회수된 제품 및 포장재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302-2	에너지 집약도
302-4	에너지 소비 감축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감축 필수 요건
303-1	수자원 관리

주제 표준 Topic Standards	
303-2	방류 관련 영향 관리
303-3	취수
303-4	방류
303-5	물 소비
304-1	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내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임대/운영되는 사업장
304-2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304-4	IUCN 적색목록 및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에 서식하는 보호종 목록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_ Scope 1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_ Scope 2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_ Scope 3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305-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305-6	오존층 파괴 물질(ODS) 배출량
305-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기타 오염물질 대기 배출량
306-1	폐기물 생성 및 폐기물이 미치는 중요 영향
306-2	중요 폐기물 영향 관리
306-3	생성된 폐기물
306-4	처리에서 전용된(재활용된) 폐기물
306-5	폐기처리 되는 폐기물
308-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친 공급업체
308-2	공급망의 부정적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401-1	신규채용 및 이직
401-2	정규직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
401-3	육아휴직
402-1	운영상 변경내용 최소 통지 기간

2. GRI 2021 인덱스

GRI 2021 INDEX

주제 표준 Topic Standards	
403-1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403-2	위험물 식별, 리스크 진단 및 사고 조사
403-3	산업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노동자 참여, 협상 및 대화
403-5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련 노동자 교육
403-6	노동자 보건 증진
403-7	산업보건 및 안전 영향의 예방과 완화
403-8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적용 대상 근로자
403-9	업무 관련 부상
403-10	업무 관련 건강문제
404-1	직원별 연간 교육 평균 시간
404-2	직원 역량강화 및 전환 지원 프로그램
404-3	정기적으로 성과 및 경력 개발 검토를 받는 직원 비율
405-1	지배구조 기구와 직원의 다양성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수 비율
406-1	차별 사례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407-1	집회결사 및 단체교섭권 훼손 위험이 있는 사업장, 공급업체
408-1	이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409-1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410-1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은 보안 담당자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례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동반하는 사업장
413-2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414-1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414-2	공급 사슬 내 부정적 사회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415-1	정치 기부금
416-1	제품과 서비스 범주의 건강 및 안전 영향 평가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 위반 건수
417-1	상품 및 서비스 정보와 표기에 대한 필수 요건
417-2	상품 및 서비스 정보와 표기 위반 건수
417-3	마케팅 소통 관련 위반 건수
418-1	소비자정보보호 위반 및 소비자 정보 손실 관련 인정된 불만 사항

3. ESRS 인덱스

주제별 보고 이슈

가이드	주제	구분	세부구분
ESRS E1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기후 관련 재무 영향 	
ESRS E2	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 오염(실내 및 실외) 수질 오염(지하수 포함) 토양오염 생물 및 식용 자원 오염 우려 물질 	
ESRS E3	물 및 해양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수 물 소비 물 사용 수역과 해양으로 방류 서식지 파괴와 해양 자원에 대한 압박 강도 	
ESRS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영향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토지사용의 변화 직접적 착취 침입 외래종 오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 개체군 규모 멸종 위기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가 제공하는 편익에 대한 영향 및 의존도 	
ESRS E5	순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재생 자원의 고갈 재생 가능한 자원의 재생 순환비즈니스 모델 폐기물 	

3. ESRS 인덱스

주제별 보고 이슈

가이드	주제	구분	세부구분
ESRS S1	자체 인력	•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고용 • 근로시간 • 적절한 임금 • 사회적 대화 • 결사의 자유 • 노조의 존재 •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및 단체교섭 현황 • 정보, 상담 및 참여에 대한 노동자 권리 • 일과 삶의 균형 • 건강 및 안전
		• 평등한 대우와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및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 교육 및 기술 개발 • 장애인 고용 및 포용 •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조치
		• 인권,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노동 • 강제노동
ESRS S2	가치사슬내 노동자	• 근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고용 • 근로 시간 • 적절한 임금 • 사회적 대화 • 결사의 자유 • 노조의 존재 •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및 단체교섭 현황 • 정보, 상담 및 참여에 대한 노동자 권리 • 일과 삶의 균형 • 건강 및 안전
		• 평등한 대우와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및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 교육 및 기술 개발 • 장애인 고용 및 포용 •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조치
		• 인권,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노동 • 강제노동

가이드	주제	구분	세부구분
ESRS S3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 공동체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주거지 • 적절한 음식 • 물과 위생 • 토지 관련 영향 • 보안 관련 영향
		• 공동체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자유 • 집회의 자유 • 인권 운동가에 미치는 영향
		• 원주민의 공동체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의지에 따라 사전적 설명에 근거하여 체결된 합의 • 자기 결정권
ESRS S4	소비자 및 최종 소비자	• 정보와 관련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 보호 • 표현의 자유 • 정보 액세스 • 마케팅 관행 • 정보의 품질 • 불만 관리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개인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및 안전 • 개인에 대한 보호 • 아동 보호
ESRS G1	비즈니스 관행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고발자 보호 • 기업 문화 • 동물 복지 • 정치참여 및 로비 활동 • 공급업체와 관계 관리 (결제 관행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및 뇌물 수수 • 예방 및 감지(교육 포함) • 부패 및 뇌물 사고

4. TNFD 인덱스

자연 관련 의존도 및 영향에 관한 TNFD 코어 지표 및 측정지표

No.	자연변화 동인	지표(indicator)	측정지표(metric)	GBF 목표와의 연관성
	기후변화	GHG 배출	• ISSB의 IFRS-S2 기후 관련 공개 지침 참조	목표7
C1.0	토지/담수/해양 사용 변화	총 공간 발자국 (Total spatial footprint)	• 아래 내용의 총합 - 조식이 통제하는 총 지표 면적(km) - 교란 지역(km) - 복원된 지역(km)	목표1(A.2), 목표2, 목표5, 목표11(B.1)
C1.1	토지/담수/해양 사용 변화의 정도	토지/담수/해양 사용 변화의 정도	• 토지/담수/해양 생태계 사용 변화 범위(km) - 생태계 유형별 - 사업 활동 유형별 • 보존 또는 복원된 토지/담수/해양 생태계 범위(km) - 자발적 보존/복원 - 규제에 의한 보존/복원 •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담수/해양 생태계 범위(km) - 생태계 유형별 - 사업 활동 유형별	목표1(A.2), 목표2, 목표5, 목표11(B.1)
C2.0		토양에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종류별 오염물질 (※ Sector-specific 가이드 참조)	목표7(7.2), 목표11
C2.1	오염/오염 제거	배출된 폐수량	• 배출된 폐수량(m) - 총량 - 담수량 - 기타 • 아래 내용 포함하여 작성: - 주요 오염물질 농도(오염물질 유형별) - 방출된 폐수의 온도	목표7(7.1), 목표11(B.1)
C2.2		폐기물 발생 및 처리의 양	• 위험 및 비위험 폐기물 발생량(톤) (유형별로 기재) • 처리된 (비)위험 폐기물의 총량(톤) - 소각량(에너지 회수 유무별) - 매립량 - 기타	목표7, 목표11(B.1)

No.	자연변화 동인	지표(indicator)	측정지표(metric)	GBF 목표와의 연관성
C2.3	오염/오염 제거	플라스틱 오염	• 플라스틱 발자국(plastic footprint): 플라스틱(폴리머, 내구재 및 포장) 총 사용량 또는 원료로써 판매량 •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플라스틱의 비율 - 재사용 가능 - 퇴비화 가능 - 기술적 재활용 가능 - 실제로 대규모 재활용 가능	목표7, 목표11(B.1)
C2.4		비 온실가스 (Non-GHG) 대기 오염물질	• 비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톤) 유형별 기재 - 미세먼지(PM2.5 및/또는 PM) - 질소 산화물(NO _x , NO 및 NO ₂) -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또는 NMVOC) - 황산화물(SO ₂ , SO, SO ₃ , SOX) - 암모니아(NH ₃)	목표7, 목표11(B.1)
C3.0		취수 및 물 부족 지역에서의 물 소비	• 수자원 부족 지역의 물 사용 및 소비량(m ³) (수원 식별 포함)	목표11(B.1)
C3.1	자원 사용/보충	고위험 자연 자원의 양	• 토지/해양/담수로부터 추출해서 만든 자연 고위험 원료(상품)의 양(톤)을 유형별로 구분, 총 자연 기반 상품 대비 비중 포함 • 지속가능한 경영 계획, 인증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고위험 자연자원의 양(톤), 총 고위험 자연 자원 대비 비중 포함	목표5(5.1), 목표9, 목표11(B.1)
C4.0	침입 외래종 및 기타	임시지표: 우발적 침입 외래종 유입 방지 조치	• 의도치 않은 외래종 도입 방지를 위한 조치 하에 운영되는 고위험 활동의 비율, 또는 저위험으로 설계된 활동	목표6, 목표11(B.1)
C5.0	자연의 상태	임시지표: 생태계 조건 임시지표: 멸종 위험성	• 자연 상태 측정 지표를 보고하기로 선택한 조직은 아래 지표 보고 (TNFD 추가지침 LEAP 접근방식 참조) - 생태계 유형 및 사업 활동별 생태계 상태 수준 - 종 멸종 위험 * TNFD에는 현재 자연 상태 변화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단일 지표가 없으며, 특정 지표를 지정하지 않음	목표1, 목표2, 목표3, 목표4, 목표11

4. TNFD 인덱스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TNFD 코어 지표

No.	카테고리	측정지표
C7.0	위험	자연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가치(총액과 총액에 대한 비중)
C7.1		자연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가치(총액과 총액에 대한 비중)
C7.2		자연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부과 받은 당해 연도 주요 과태료/벌금/소송의 내용 및 금액
C7.3	기회	자연 기반 기회에 투자된 자본, 지출, 재정 또는 투자금을 유형에 따라 기재(정부, 규제기관의 녹색 투자 분류, 제 3자 산업, NGO 분류를 참조)
C7.4		자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서비스의 매출 증가 및 이들의 비중을 영향과 함께 설명

자연 관련 의존도와 영향에 관한 TNFD 글로벌 추가 지표

No.	척도 카테고리	측정지표
A1.0	자연 변화의 동인: 토지/담수/해양 사용 변화	토지 이용 강도
A2.0	자연 변화의 동인: 오염/오염물질 제거	폐수용량: 처리, 재사용/재활용, 회피
A2.1		폐기물 최소화, 재사용, 재활용량
A2.2		오염물질 제거량
A2.3		빛과 소음 공해
A3.0	자연 변화의 동인: 자원사용 및 보충	물 소비 및 취수 총량
A3.1		물 보충량
A3.2		감추, 재활용, 재사용된 물의 양
A3.3		경감된 물 손실량
A3.4		자연자원 생산을 위해 사용된 토지 면적
A3.5		야생동물 사용량
A4.0	자연 변화의 동인: 침입 외래종 및 기타	의도치 않게 도입된 종, 품종 또는 균주의 수/범위
A5.0	자연의 상태	생태계 조건
A5.1		생태계 범위
A5.2		생태계 연결성
A5.3		멸종 위험
A5.4		종 개체군 크기
A6.0	생태계 서비스	조직이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의 질, 사용성의 변화를 측정
A6.1		의존하는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의 질, 사용성 변화를 측정

4. TNFD 인덱스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TNFD 글로벌 추가 지표

No.	위험/기회	카테고리	측정지표	
A7.0	위험	복합	자연 관련 위험으로 인한 자산의 감가 상각 및 조기 폐업 (early retirements of assets) 가치	
0A7.1			자연 관련 위험에 투자된 투자금, 자본지출, 재정 가치	
A8.0		물리적 위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산의 가치, 연간 매출 총량 설명	
A8.1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locations/business lines) 및 시설(facilities)의 수	
A8.2			자연 관련 손실 및 손해로 인해 인프라 자산 정비 및 교체에 사용된 자본 지출의 가치	
A8.3			지난해 자연 관련 손실 또는 손해로 인한 보험료 증가율	
A8.4			자연 관련 물리적 위험에 적응하는 데 사용된 자본 지출	
A8.5			자연 관련 물리적 위험에 따라 사업운영지 및 공급업체 이전 (relocation) 비용	
A8.6			자연 관련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가치(총액 및 총액에 대한 비중)	
A9.0			전환 위험	자연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가치 (총액 및 총액에 대한 비중)
A10.0			전환위험-정책	사업장 지역 손실과 관련된 비용과 설명
A11.0			전환위험-부채	자연 관련 영향에 따른 정화(clean-up) 비용과 설명
A12.0		전환위험-시장	시장 접근 상실에 대한 노출 및 비용에 대한 설명	
A12.1			원자재 및 자연 자본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 및 비용에 대한 설명	
A13.0		전환위험-평판	평판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운영 비용 및 매출 손실에 대한 노출	
A14.0		전환위험-평판	자연 관련 위험에 대한 적응 및 경감을 위해 신규/대체 기술을 위한 R&D 비용	
A15.0		기회	시장	지난 3년간 매해 ESG 평가 등급의 변화
A16.0	자본 흐름 및 재정		녹색 채권 및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과 같은 녹색 금융 상품의 가치	
A17.0	자원 효율성		자연 관련 자원 사용 효율성 증진, 순환경제 관행 채택과 같은 자연 관련 경영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	

자연 관련 이슈에 대한 TNFD 추가 글로벌 지표

No.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측정지표		
A19.0	정책, 약속, 목표	전략	기간이 정해져있고 정량화 가능한 목표의 비중		
A19.1			단기, 중기, 장기적 위험 및 기회를 설명하는 목표의 비중		
A19.2			지리적 위치, 중점 위치와 관련된 목표의 비중		
A20.0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	자연 관련 이슈에 대해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높은 위치의 비중		
A20.1			산업 전체 및/또는 다자간 계약 참여 (계약의 수, 포함된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그룹의 수)		
A21.0	자본 배분/ 투자	자본 배분/ 투자	부정적인 자연 영향을 줄이거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생태계 또는 생물종들을 보호, 복구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된 투자 비용의 가치		
A21.1			관련 정부 또는 규제 기관의 녹색 투자 분류법에 정의된 자연 관련 솔루션에 대한 투자		
A22.0	의존도, 영향, 위험과 기회 관리	가치사슬	자연 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된 공급업체의 비중 (지출 및/또는 규모별)		
A22.1			식별된 주요 자연 이슈 및/또는 자연 관련 이슈 평가 시 참여하는 공급업체의 비중(지출 및/또는 규모별)		
A22.2			공신력 있고 투명한 제3자 기관 인증서: 생산, 소비, 원재료 소싱의 비율(%) 및/또는 가치(인증 유형별)		
A22.3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 원재료 소싱, 생산, 소비의 비중		
A22.4			지속가능한 생산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로 약속한 공급업체의 비중		
A23.0			자연 변화 (의존도 및 영향): 피해 완화 계획 단계	자연 변화 (의존도 및 영향): 피해 완화 계획 단계	자연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사이트(site)의 비율
A23.1					i) 폐기물 또는 ii)제품/재료 유출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
A23.2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생물종과 생태계 복구는 생태계/생물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분류함 - 법규상 요구되는 경우 -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 자발적인 경우

4. TNFD 인덱스

자연 관련 이슈에 대한 TNFD 추가 글로벌 지표

No.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측정지표
A23.3	의존도, 영향, 위험과 기회 관련	자연 변화 (의존도 및 영향): 피해 완화 계층 단계	생태계 복원 및/또는 종 복원 프로젝트의 범위(km), 기간(년), 모니터링 빈도(회/년)
A23.4			순환 재료 사용 비율(%)
A23.5			운영/자본 지출액을 다음의 피해 완화 계층 행동에 따라 작성 (가치 및/또는 비율(%)의 형태로) - 피하기 / 줄이기 / 복원 및 재생 / 변환
A23.6			임무 신용 시장제: 유형 및 범위(지역, 활동)별로 구매 및 판매된 생물다양성 오프셋 가치
A24.0		자발적인 보존, 복원, 재생	자발적인 생태계 및/또는 종 복원에 투자된 가치
A24.1			자발적 생태계 및/또는 종 복원 프로젝트의 범위(km), 기간(년) 및 모니터링 빈도(회/년)
A24.2			추가 보존 활동에 대한 투자 가치를 활동 유형 및 적용되는 생태계/생물군 유형별로 분류
A24.3			원주민과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 관련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가치
A24.4			자발적 신용 시장제: 유형 및 범위(지역, 활동)별로 구매, 판매된 생물다양성 오프셋 가치
A25.0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 평가
A25.1	직접 운영 사업장 중 평가된 곳의 비율(%)		
A25.2	운영 사업장의 업 스트림, 다운 스트림 평가 비율(%)		
A25.3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 사용이 가능한 공급업체의 비율(%)		

5. 참고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GRI

- <https://www.globalreporting.org>
- GRI Standards 2021 (GRI, 2023년 12월 업데이트)

ISSB

- <https://www.ifrs.org>
- IFRS S1 및 S2 국문 번역본 공개 초안(한국회계기준원, 2023.7)

ESRS

- <https://www.efrag.org>
- First Set of draft ESRS & Basis for conclusions (EFRAG, 2023.6)

TCFD

- <https://www.fsb-tcfd.org>
-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에 관한 태스크포스(한국공인회계사회, 2021.6)

TNFD

- <https://tnfd.global>
- Recommendations of the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NFD, 2023.9)
-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nature-related Issues: The TNFD LEAP approach Version 1.0 (TNFD, 2023.9)

SASB

- <https://sasb.org>
- SASB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국문 번역본(한국회계기준원, 2021.11)

CDP

- <https://www.cdp.net/en/guidance>
- 2023 CDP Climate Change 질의서(국문) 개정본(KoSIF)
- 2023 CDP Water Security 질의서(국문) (KoSIF)

5. 참고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UNGPs

- <https://www.ohchr.org>
-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인권위원회, 2011)

SEC

- <https://www.sec.gov>
-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SEC, 2022.5)

유니레버

- <https://www.unilever.com>
- Unilever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

코카콜라

- <https://coca-colacompany.com>
- coca-cola-business-sustainability-report-2022

힐튼

- <https://esg.hilton.com>
- Hilton-2022-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 Report

애플

- <https://www.apple.com/kr/supplier-responsibility>
- 2022년 경과 보고서 Apple 공급망에 속한 사람과 환경



ESG INFORMATION DISCLOSURE HANDBOOK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기획·발행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www.cses.re.kr 김현정(ESG연구팀 선임연구원)
연구·집필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 www.insbee.co.kr 유승권(센터장), 한지희(팀장)
디자인	스튜디오 럼

ISBN 979-11-979214-3-8 (15320)

CSES

사회적가치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비매출/무료

15320



9 791197 921438

ISBN 979-11-979214-3-8 (PDF)